



함평 11사단 사건

【결정사안】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1950. 11. 20. 경부터 1951. 1. 14.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과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면 덕림리 및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와 인근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총살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노방주 외 248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11월 20일 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과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및 인근에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 대위) 군인들에게 집단총살되었으며, 정남숙 외 8명은 부상을 당했다.

2. 희생자는 전라남도 함평군과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성군 주민이었으며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고, 20세 이하가 93명으로 36.5%, 61세 이상이 11명으로 4.4%였다.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적 미등재자도 16명이었다.

3.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비전투원인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는 불갑산 인근에 자리 잡은 이들 지역에서,

- 가. 함평군 월야면 장교·동촌·서촌마을 사건은 국군과 빨치산이 전투를 할 때 징과 팽과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다고,
- 나.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은 빨치산에게 협력하였다고,
- 다. 함평군 월야면 남산외 사건은 전날 밤 봉홧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다고,
- 라.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사건은 마을 앞 도로를 파손하였다고,
- 마. 함평군 해보면 쌍구룡·모평마을 사건과 우치리 사건은 불갑산 아래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소개 나온 지역으로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 바.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사건은 좌익 협력자가 마을에 거주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총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마을의 경제력 있는 주민은 광주 등 대도시로 사전에 피난하였고, 실제로는 좌익 활동을 하였거나 빨치산에 협조적이었던 주민들은 불갑산에 입산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거주민은 이들 빨치산 협력,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다.

4. 5중대는 장교 동촌 마을과 성대·모평마을 및 우치리에서는 주민들을 마을 앞 도로변에 불러내어 어떠한 선별절차도 없이 총살하였고, 수해리에서는 청·장년 남자를 가려내어 총살하였고, 남산피에서는 17~45(40)세로 추정되는 남녀를 총살하였으며, 이문리에서는 명단을 보고 지목하여 총살하였고, 그리고 외치리에서는 주민을 연행하여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인근에서 총살 또는 타살하였으며, 덕림리에서는 주막에 모여 있던 주민을 5중대 초소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5. 사건의 가해부대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가해부대의 지휘·명령계통을 보면 국군 11사단 사단장 최덕신 준장, 20연대 연대장 박기병 대령, 2대대 대대장 유갑열 소령, 5중대 중대장 권준옥 대위였다.

6. 5중대장 권준옥 대위는 사건 현장에서 주민을 집단학살하도록 지시·명령한 지휘관이었고, 20연대장과 2대대장은 5중대의 이 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으며, 11사단장은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이라는 주민희생이 따르는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예하 연대에 지시하였다. 이후 5중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추정되는 연대 병기장교로의 전보조치가 있었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사단의 지휘·명령계통 상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7. 함평 11사단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닌데도 주민을 빨치산 토벌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총살 사건이었다. 빨치산 토벌이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다 하더라도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을 그것도 어린이와 노약자까지 포함된 지역 주민을 재판 등의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8.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적인 민간인 총살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사건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또 유족들은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인에 대한 전사기념비를 세운 것에 주목하여, 해당 정부부처는 유족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가는 전쟁발생 시기나 위기 사태 하에서 민간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군인, 특히 지휘관들이 인권보호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 다-1254 외 183건 함평11사단사건

【신청인】 노병량 외 183명

【결정일】 2007. 7. 3.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노병량 외 191명은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시기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그리고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이 신청한 사건 건수는 192건, 그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총수는 283명(부상 9명 포함)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서 검토 후 조사개시 결정, 조사계획 수립, 조사개시 결정 설명회, 본 조사의 순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네별 신청서 접수내역과 추정 피해자 및 피해인원은 <표 1>과 같다. (괄호 안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수)

〈표 1〉 신청서 접수현황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8건·6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23	20060209	오춘열	1949	오봉근	37	1950	1127	신청인의 부	1
2	1224	20060209	정양수	1937	정진국	42	1950	1127	신청인의 부	1
3	1225	20060209	유우현	1962	유재섭	23	1950	1127	신청인의 백부	1
4	1226	20060209	정옥순	1934	유태열	30	1950	1127	신청인의 시숙부	1
5	7238		정옥순						중복신청	
6	1227	20060209	정종화	1944	정성규	36	1950	1127	신청인의 부	1
7	1228	20060209	오철근	1930	오팔근	15	1950	1127	신청인의 동생	1
8	7239		오철근						중복신청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3건·9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02	20060209	박양순	1948	박두남	51	1950	1206	신청인의 조부, 모 김순란, 삼촌 종한, 고모 순심, 아기(호적 미등재)	5
2	1203	20060209	한정옥	1944	이복녀	34	1950	1206	신청인의 모, 아기(호적 미등재)	2
3	1204	20060209	강풍전	1940	이순득	29	1950	1206	신청인의 모, 아기 1명(호적 미등재)	2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8건·11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196	20060209	서백수	1929	서만동	49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2	1197	20060209	서창복	1951	서석암	51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3	1198	20060209	곽진관	1963	곽판용	51	1950	1206	신청인의 조부	1
4	1199	20060209	곽상태	1933	곽석연	43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5	1200	20060209	서창호	1944	서용기	49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6	1201	20060209	곽상덕	1941	곽지연	42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7	1205	20060209	박종인	1940	박소남	44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8	2869	20060407	김희태	1969	김삼금	45	1950	1206	신청인의 조부, 고모 초순, 당숙 성애, 상울	4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2건·2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318	20060216	이덕부	1941	이연범	31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2	3487	20060515	이재하	1940	이판금	42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10건·10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188	20060215	임일수	1949	임봉수	27	1950	1206	신청인의 사촌형	1
2	1189	20060215	임일수	1949	임양수	24	1950	1206	신청인의 사촌형	1
3	1190	20060215	임일수	1949	임선진	40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4	1191	20060215	김매화	1941	김병수	35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5	1192	20060215	김주섭	1947	김수성	26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6	1193	20060215	노도출	1947	노병훈	27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7	1194	20060215	이종철	1942	이수범	31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8	1195	20060215	유귀복	1928	노병조	23	1950	1208	신청인의 남편	1
9	1206	20060209	노선균	1950	노병식	25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10	1207	20060209	노필귀	1955	노준기	53	1950	1206	신청인의 조부	1

〈함평군 월야면 남산외〉

76건·80명, 부상 8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127	20060209	정민봉	1950	김갑순	34	1950	1207	신청인의 양모	1
2	1128	20060209	정진억	1940	정진덕	19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3	1129	20060209	정상수	1940	최용례	38	1950	1207	신청인의 모 형 천수	2
4	1130	20060209	정기문	1955	정종문	17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5	1131	20060209	심춘택	1961	심용기	12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6	1132	20060209	정근우	1942	정길문	31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7	1133	20060209	정근한	1938	정동수	20	1950	1207	신청인의 삼촌	1
8	1134	20060209	정태환	1942	정계환	13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9	1135	20060209	정충섭	1922	정방섭	21	1950	1207	신청인의 동생	1
10	1136	20060209	정득모	1937	정병모	18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11	1137	20060209	정홍순	1941	정진철	19	1950	1207	신청인의 오빠	1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2	1138	20060209	정부덕	1950	정동모	20	1950	1207	신청인의 시숙	1
13	1139	20060809	오공숙	1939	정민모	19	1950	1207	신청인의 시숙	1
14	1140	20060209	이순례	1925	정진발	20	1950	1207	신청인의 시동생	1
15	1141	20060209	정진천	1950	정창진	13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16	1142	20060209	정재문	1933	정재호	22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17	1143	20060209	김선행	1953	김순애	17	1950	1207	신청인의 고모	1
18	1144	20060209	김재익	1938	김재만	18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19	1145	20060209	정진임	1950	정옥모	30	1950	1207	신청인의 부, 삼촌 기모	2
20	1146	20060209	정병호	1947	정재환	21	1950	1207	신청인의 삼촌	1
21	1147	20060209	정계수	1950	정중진	23	1950	1207	신청인의 부친	1
22	1148	20060209	정진정	1951	정문모	33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23	1149	20060209	정공진	1949	정양모	39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24	1150	20060209	정철진	1951	정진봉	43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25	1151	20060209	정응모	1936	정병모	18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26	1152	20060209	안춘자	1939	정근모	16	1950	1207	신청인의 시삼촌	1
27	1154	20060209	정길호	1965	김유순	54	1950	1207	신청인의 모	0
28	1155	20060209	정석봉	1936	정동석	19	1950	1207	신청인의 형 동석, 동섭	2
29	1156	20060209	이경범	1946	이사석	38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30	1157	20060209	정윤철	1948	정홍섭	30	1950	1207	신청인의 양부	1
31	1158	20060209	정진섭	1944	정봉수	47	1950	1207	신청인의 양부	1
32	1159	20060209	오영남	1934	정달모	20	1950	1207	신청인의 남편	0
33	1160	20060209	정방수	1950	정진철	28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34	1161	20060209	이재환	1945	이점동	40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35	1162	20060209	정기훈	1948	정남섭	39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36	1163	20060209	정운섭	1939	정봉섭	23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37	1164	20060209	정송모	1939	정근모	17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38	1165	20060209	윤만중	1938	윤필중	18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39	1166	20060209	윤납순	1946	정상휴	36	1950	1207	신청인의 시부	1
40	1167	20060209	정진자	1957	정익모	44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41	1168	20060209	조병술	1936	조병혁	31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42	1169	20060209	정을호	1953	정병선	18	1950	1207	신청인의 사삼촌	1
43	1170	20060209	정진재	1928	정진차	15	1950	1207	신청인의 동생	1
44	1171	20060209	정공열	1944	정현수	17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45	1172	20060209	정복기	1972	정현기	13	1950	1207	신청인의 백부	1
46	1173	20060209	이옥희	1937	이계순	17	1950	1207	신청인 언니 계순	1
47	1174	20060209	정옥기	1947	정해로	16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48	1175	20060209	정창호	1947	정영관	36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49	1176	20060209	김선영	1939	김영섭	32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50	1178	20060209	정유순	1946	정봉휴	37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51	1179	20060209	정재모	1960	정재복	27	1950	1207	신청인 백부 재복, 흥섭	2
52	1180	20060209	정은균	1954	정재섭	28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53	1181	20060809	정경숙	1941	정병섭	30	1950	1207	신청인의 시부, 시모 김명자	2
54	1182	20060209	백삼남	1924	정광열	26	1950	1207	신청인의 남편, 시동 생 말동	2
55	1183	20060209	정남숙	1928	정남숙	22	1950	1207	본인	0
56	1184	20060209	정영수	1946	정진을	30	1950	1207	신청인의 숙부	1
57	1185	20060209	정영위	1949	정동휴	25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58	1186	20060209	정근욱	1949	정동기	19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59	1187	20060209	노흥용	1929	정귀님	15	1950	1207	신청인의 처	1
60	1314	20060216	김흠선	1937	정기찬	24	1950	1207	신청인의 남편	0
61	1315	20060216	정귀례	1938	정맹모	41	1950	1207	신청인 부, 언니 차임	2
62	1316	20060216	정용운	1931	정열	15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63	1317	20060216	정길수	1940	정진기	28	1950	1207	신청인의 부	0
64	2243	20060308	정종욱	1927	정삼근	14	1950	1207	신청인의 동생	1
65	2244	20060308	김윤선	1949	김도담	16	1950	1207	신청인의 누나, 윤 월, 쌍순	3
66	2245	20060308	정순남	1935	이상숙	30	1950	1207	신청인의 남편	0
67	2872	20060407	정연순	1930	정병우	23	1950	1207	신청인 남편, 동생 민선	2
68	2974	20060412	정재형	1943	정태섭	28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69	3752	20060529	배정자	1938	정계형	34	1950	1207	신청인의 시부	1
70	3898	20060612	정기옥	1955	정희섭	18	1950	1207	신청인의 부	0
71	3900	20060612	정팔림	1933	정팔봉	24	1950	1207	신청인의 오빠	1
72	4267	20060710	정남진	1943	정석두	41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73	4435	20060724	정진섭	1944	정병찬	17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74	4696	20060809	정진두	1937	정남선	29	1950	1207	신청인의 고종 사촌 형 정재덕, 남선	2(1)
75	6741	20061113	윤을석	1944	윤성중	29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76	1153	20060809	정이재	1969	정봉원	33	1950	1207	신청인의 백부, 정원	2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14건·15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09	20060209	이순열	1942	이남열	18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2	1210	20060209	이상구	1950	이상근	16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3	1211	20060209	정호현	1948	정기봉	20	1950	1209	신청인의 부	1
4	1212	20060209	정판수	1954	정기업	19	1950	1209	신청인의 숙부, 기순	2
5	1213	20060209	정기정	1940	정기선	14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6	1214	20060209	이용현	1936	이계주	23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7	1215	20060209	정용현	1950	정기동	31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8	1216	20060209	정귀현	1952	정갑현	14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9	1217	20060209	정석현	1946	정석봉	15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10	1218	20060209	정재선	1937	정달선	15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11	1219	20060209	정병원	1953	정기복	17	1950	1209	신청인의 숙부	1
12	1220	20060209	정동현	1951	정상현	17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13	1221	20060209	정종성	1973	정만선	25	1950	1209	신청인의 조부	1
14	1222	20060209	정재준	1956	정기우	21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사정마을)〉

7건 · 10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121	20060209	김승원	1947	김기복	64	1950	1209	신청인의 조부	1
2	1122	20060209	김수창	1942	김담봉	51	1950	1209	신청인의 부, 모 박삼봉	2
3	1123	20060209	김완기	1929	김용길	57	1950	1209	신청인의 부, 모 이계례	2
4	1124	20060209	김완기	1929	김양임	14	1950	1209	신청인의 여동생	1
5	1125	20060209	김호욱	1934	정감산	58	1950	1209	신청인의 조부	1
6	1126	20060209	김현석	1953	안명임	20	1950	1209	신청인의 모, 형 맹수(호적 미등재)	2
7	2870	20060209	오정수	1948	오경선	15	1950	1209	신청인의 삼촌	1

〈함평군 해보면 쌍구룡〉

10건 · 28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30	20060209	김형술	1928	김영만	59	1950	1231	신청인의 부	1
2	1231	20060209	장재수	1938	장진섭	48	1950	1231	신청인 부, 모 조운여, 숙부 순섭, 숙모 청암댁, 여동생 이님 재님(호적미등재)	6
3	1232	20060209	김중희	1934	노월산	35	1950	1231	신청인의 모, 여동생 순덕, 아기(호적미등재)	3
4	1233	20060209	이금남	1936	이석여	72	1951	0112	신청인의 조부, 모 최봉예, 남동생 이정행	3
5	1236	20060209	박용원	1941	박영수	41	1950	1231	신청인의 부, 모 구순녀, 숙부 민수, 숙모 김연녀, 여동생 금희(호적미등재)	5
6	1240	20060209	김재귀	1944	김만엽	52	1950	1231	신청인의 부, 신청인의 백부 경엽	2
7	1253	20060209	이정미	1961	이봉범	42	1950	1231	신청인 조부	1
8	3923	20060613	이병한	1958	이종락	29	1950	1231	신청인의 숙부	1
9	4689	20060809	장재수	1938	장아기	0	1950	1231	신청인의 여동생(호적미등재)	1
10	1239	20060209	박희남	1941	박종순	41	1950	1231	신청인의 부, 모 정필례, 오빠 박희수, 제희옥 희관(호적 미등재)	5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24건 · 61명, 부상 1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08	20060209	윤병용	1938	윤상수	53	1950	0112	신청인의 부, 모 김정임, 형 병길병식, 누님 복덕	5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2	1234	20060209	윤경중	1938	김유촌	83	1951	0112	신청인의 조모	1
3	1235	20060209	윤현중	1937	주순님	42	1951	0112	신청인의 모, 형 창중	2
4	1237	20060209	임기운	1952	임막동	50	1951	0112	신청인의 부, 모 윤선 순, 누이 남도 명순(호 적 미등재)	4
5	1238	20060209	이이범	1928	이귀범	16	1950	1231	신청인의 둘째 숙부 갑 열, 숙모 한대례, 사촌 안범, 귀범, 영범, 현득, 윤범, 문범, 질녀 오목, 우범 아가(호적 미등재)	11
6	1241	20060209	윤길수	1942	윤옥중	49	1951	0112	신청인의 부	1
7	1242	20060209	장종석	1947	장규옥	39	1951	0112	신청인의 부, 모 윤희 임, 여동생 아가(호적 미등재)	3
8	1243	20060209	윤일성	1941	임상봉	55	1951	0112	신청인의 조모, 신청인 의 부 윤판술	2
9	1246	20060209	윤종길	1952	정순임	16	1951	0112	신청인의 큰어머니(혼 인신고 미필)	1
10	1247	20060209	김윤임	1926	윤석열	27	1951	0112	신청인의 남편	1
11	1248	20060209	윤한봉	1970	김처녀	43	1951	0112	신청인의 조모, 백모 김용순, 누님 윤명래(호 적 미등재)	3
12	1249	20060209	윤철곤	1966	윤양중	22	1951	0112	신청인의 백부	1
13	1250	20060209	김복수	1941	김기중	49	1951	0112	신청인의 부	1
14	1251	20060209	김광현	1957	정지족	76	1951	0112	신청인의 증조모	1
15	1252	20060209	윤오중	1939	윤규삼	70	1951	0112	신청인의 부, 모 정고녀	2
16	1254	20060209	노병량	1941	노방주	35	1951	0112	신청인의 부, 여동생 병희, 아가(호적미등재)	3
17	2871	20060407	이귀성	1943	이유용	40	1951	0112	신청인의 부	1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8	3922	20060613	최남용	1941	최희락	12	1951	0112	신청인의 오빠	1
19	4944	20060825	장종석	1947	장종석		1951	0112	본인	0
20	10830	20061130	윤길수	1942	정동용	25	1951	0112	신청인 목격 정동영	1
21	10831	20061139	윤길수 (목격자)	1942	윤덕림	22	1951	0112	윤석규, 윤석문, 윤유성, 장양림, 이평림, 모순녀	7
22	1244	20060209	윤양성	1961	정영환	28	1951	0112	신청인 큰어머니, 삼촌, 동생 금중(호적미기재)	3
23	1245	20060209	윤금복	1948	윤양삼	74	1951	0112	신청인의 조부, 모 장 분순, 고모 분덕, 동생 호순, 호남(호적미기재)	5
24	3631	20060523	채상현	1951	채병길	33	1951	0112	신청인의 부	1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8건 · 9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희생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 년도	이름	사망 나이				
1	1054	20060209	이계준	1933	김증산	59	1951	0114	신청인의 모	1
2	1114	20060209	이계백	1947	안귀식	29	1951	0114	신청인의 외삼촌	1
3	1115	20060209	이계백	1947	안귀순	34	1951	0114	신청인의 모, 동생 아기 (호적미등재)	2
4	1118	20060209	김재경	1946	김신광	62	1951	0114	신청인의 조모	1
5	1119	20060209	정병호	1934	정병옥	10	1951	0114	신청인의 동생	1
6	1120	20060209	고영석	1941	문앵례	68	1951	0114	신청인의 백모	1
7	1116	20060209	정병주	1937	윤철순	42	1951	0114	신청인의 모	1
8	1117	20060209	정태중	1968	김옥례	41	1951	0114	신청인의 모	1



〈소규모 희생사건〉

23건 · 33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피해장소 및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 년도	이름	사망 나이				
1	1229	20060209	정병화	1946	정성면	31	1950	1127	신청인의 부	1
2	555	20060103	이만희	1951	이동선 외 3	28	1950	1128	해보면 금덕리 고두저수지변 신청인의 숙부(이동선, 동기, 정열, 정기)	4
3	556	20060109	안길원	1946	안해동	43	1950	1128	해보면 문장시장 장터 신청인의 부 안해동	2
4	1049	20060209	김홍빈	1934	김기만	45	1950	1203	해보면 금덕리 고두마을 뒤 신청인의 부 김기만, 모 정 약순, 형수 강정순, 여동생 김인순	4
5	1173 (분리)	20060209	이옥희	1937	이병옥	27	1950	1205	삼도면 도덕리 삼도지서, 신 청인의 오빠, 실종.	1
6	1177	20060209	정윤현	1948	정창기	27	1950	1207	월야면 월야리 전하마을 신청인의 부	1
7	1319	20060216	이기신	1934	이성신	19	1950	1105	해보면 금덕리 사자등 신청인의 형	1
8	2744	20060330	이재문	1930	이용범	45	1950	1125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부 이용범, 모 윤효순	2
9	2862	20060407	김영휴	1932	김영만	20	1950	1213	월야면 월악리 평촌 신청인 형 김영휴(호적오기)	1
10	2868	20060407	노병철	1969	노봉래	55	1950	1129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조부 노봉래, 고모 노연재(호적 미 등재)	2
11	3223	20060426	최병수	1957	최남휴	34	1950	1207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숙부	1
12	3626	20060523	이덕행	1938	이윤선	64	1950	1222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부 이손동	2
13	3899	20060612	이국범	1950	이달성	27	1950	1126	월야면 양정리 신청인의 숙부	1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피해장소 및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 년도	이름	사망 나이				
14	3919	20060613	윤석주	1944	윤일두	45	1950	1225	해보면 금덕리 새다리목 신청인의 부 윤일두	1
15	4104	20060704	장동규	1933	박명수	25	1950	1210	월야면 계림리 금치 신청인의 외숙	1
16	4557	20060731	배상호	1946	배판수	28	1951	0106	해보면 귀밀 신청인의 부	1
17	4558	20060731	이재삼	1948	이기범	35	1950	1205	월야면 정산리 신청인의 부	1
18	5612	20061011	양윤식	1934	양대자	40	1950	1204	월야면 용암리 은암마을 신청인의 4종간	1
19	5617	20061011	김성수	1938	김소림	16	1950	1210	월야면 용정리 신청인의 누님	1
20	6302	20061026	윤무병	1929	윤봉연	49	1950	1221	해보면 쌍구룡 신청인의 부	1
21	6306	20061026	서동기	1951	서이섭	26	1950	1130	해보면 해보리 신청인의 숙부	1
22	8485	20061130	김현필	1946	김병갑	40	1950	1227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부	1
23	10810	20061130	봉석	1964	봉진성	28	1950	1204	해보면 문장리 신청인의 양부	1

2. 신청인의 주장

함평11사단사건은 진실규명신청인들이 1950년 11월 20일 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당시 광산군 본량면 일대에서 국군 11사단(사단장 최덕신) 20연대(연대장 박기병) 2대대(대대장 유갑열) 5중대(중대장 권준옥)에 의해서 민간인 283명(부상 9명 포함)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II. 조사의 근거와 진실규명 과제

노병량 외 191명은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사이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집단희생규명위는 이 사건이 기본법 제2조 1항 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집단희생규명위는 함평 11사단 사건에 대하여 ① 사건의 규모 ② 지역별 형평성 ③ 국군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유형별 대표성 ④ 접수순서에 따른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06년 4월 25일 152건을 조사개시 한 이래 5월 30일 15건, 7월 25일 46건, 2007년 2월 6일 20건을 병합하여 조사개시 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28일 제21차 집단희생규명위는 ‘함평11사단사건’의 범위를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의 기간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의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희생사건으로 한정시키기로 결정하고, 192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III. 조사의 방법 및 경과

1.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가. 신청인 조사

사건 신청인 192명 중 2007년 6월 20일 현재 185명에 대한 신청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7명의 신청인 중 박희남(사건번호 다-1239)은 사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채상현(다-3631), 윤금복(다-1245), 정태중(다-1117)은 연락 두절로 인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윤양성(다-1244)은 장애를 이유로, 정병주(다-1116)는 진술을 거부하였고, 정이재(다-1153)는 수차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안 되어 조사할 수 없었다.

또 신청인 이옥희(다-1173)의 경우 언니 이계순은 남산피에서, 오빠 이병옥은 광산군 삼도지서에서 군인에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하였다.

나. 희생자 측 참고인 진술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관련 희생자 측 참고인 18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산피 사건의 현장 생존자 및 월야 학도연맹원(학련), 6중대 학도의용군, 청년방위대원(청방), 구국연맹원(구련), 한새들 전투 목격자, 수해리 주민, 그 밖에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표 2〉 희생자 측 참고인 진술조사 현황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정일웅	현장 생존자	20060526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큰집에서 청년 10여명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월야 지서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 하자는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총소리가 들리면서 나 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복범	월야 학도연맹 선전부장	20061213	월야노인회관	진술조서	해보지역에는 G-2가 7~8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2는 주로 5중대 소속으로 사건 이 있고 난 뒤 주민여론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근	6중대 청년방위대원	20061213	자택	녹취	연대계시판에서 5중대 전과표를 보니 내가 사는 해 보면 상곡리 작전이었어요. 적 사살 400명, 노획물 호미 괄이 곡괘이 창 죽창이라고 써있었어요. 날짜 는 음력 동짓달 그믐 무렵입니다.
최인규	5중대 청년방위대원	20061213	월야면사무소	진술조서	청방은 대기상태에 있었고 밥은 주변 마을에서 조 달해 주었으며 경찰의 명령에 사역도 했습니다. 우 리는 군인과 경찰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일이 었고 청방이 있는 마을은 순번을 정해서 밥을 나르 니 피해가 없었습니다.
박성구	5중대 청년방위대원	20061213	월야면사무소	진술조서	저는 16살이었는데 살기 위해 12월초 청방에 들어 갔습니다. 1중대 소속이었는데 해보중학교 옆 도로 가에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청방이 4군데에 있었 으니 4개 중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현모	해보 학도연맹원	20060720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쌍구룡사건은 본부소대 병력을 제외한 중대병력이 주도했습니다. 나는 쌍구룡에 가서 주민을 죽이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중대장이 관상 보듯이 골라내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걸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에게도 총격을 했습니다.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정현모	해보 학도연맹원	20070118	월야면 다방	진술서	G-2는 후방에서 활동하던 정보원으로 인공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부분으로 5중대 소속이었습니다. 함평사람이지만 이쪽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5중대 진주 때 G-2가 중대에 정보 보고를 하였습니다. 구련도 정보수집을 하였는데, 개인감정으로 빨갱이로 왜곡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윤채병	해보 학도연맹원	2006060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빨치산과 교전을 벌이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군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비들에게 쫓기면 화풀이로 주민을 죽이고 불을 지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홍병	구국연맹원	2006060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해보 학련대장이 서○○이었습니다. 학련 감찰반에 문○○, 신○○, 이○○ 등이 있었는데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폭행했습니다. 특히, 문○○은 대창으로 찢러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군인들이 학련을 길잡이로 앞세워 마을에 가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윤홍병	구국연맹원	20060627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화기 소대는 해보면 중대본부와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화기소대가 주둔한 곳이 처가 뒤여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김석주	해보 대한청년단원	20060629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전쟁 전에 청방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예비 군인의 개념이었습니다. 5중대 진주 후에는 대한청년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대한청년단은 50~60명이었고 처음에는 지서 보조 임무를 수행하다 5중대장이 30명 정도를 뽑아 군 임무를 수행하는 청방이라는 조직으로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이행하	주민(목격자)	2006062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해보 진주 후에도 빨치산들은 밤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야 상면 습격이 있고 난 후에는 빨치산들이 마을에 나타나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을이 불타고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진채언	주민(목격자)	2006062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장교·동촌마을쪽에서 아침에 총소리를 듣고 전투가 벌어진 줄 알았으며, 당일 군인들이 복귀 후 장교마을 누나 집에 피해가 있는지 보려고 가다보니 동촌마을 주민 수십 명이 논과 도로변에 죽어 있었습니다.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장두병	주민(목격자)	2006062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신기마을 앞에 한새들이 있고 중간에 지하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투 중 공비들이 저수지 물을 터 버리자 위치가 노출된 군인이 모두 논 위로 나왔고 군인 2명이 죽었습니다. 지하보에 물을 넣은 것으로 봐서 공비는 마을 사정을 잘 아는 빨치산의 소행이었을 것입니다.
임화수	주민(목격자)	20060607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군인 한 명이 소를 끌고 가는 저에게 ‘진작부터 끌고 왔느냐’는 말을 경상도 말로 물어 못 알아듣고 그냥 “예”했습니다. 그 군인은 “너는 빨리 가”하면서 엉덩이를 걷어차려는 것을 피하고 도랑을 건널 때 총소리가 나 뒤를 보니 군인들이 일행 중에 임광진, 김병수, 심달섭, 김종섭, 임봉수씨 등 12명을 3열로 세워놓고 총을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재윤	주민(목격자)	20060824	유족회 사무실	진술조서	동생 재선이 “전하마을 뒷산에서 한 사람은 죽어 있고, 세 사람은 군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총으로 죽이는 것을 봤다”고 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너의 형들이 죽었다”고 해 그때 형님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정신	주민(목격자)	20060720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정성면의 시신을 외치재에서 저와 둘째형이 가져왔습니다. 정성면이 끌려간 지 얼마 안 되어 외치재 쪽에서 총소리가 난 후에 정성면의 부인이 우리 형제에게 시신을 찾아달라고 하여 군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 주었습니다.
윤주원	주민(목격자)	20060719	함평군 해보면	진술서	5중대 군인들이 이발소에서 주민들 집에서 금반지, 분첩 등을 가져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분첩은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1950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군인들이 “상부로부터 하루에 공비 50명씩을 죽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홍춘성	주민(목격자)	20060719	함평군 해보면	진술서	1950년 11월경 5중대가 해보에 진주하여 중대본부가 설치되고, 5중대장이 학도대를 설치하라고 해서 본인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도대를 결성하였고, 이를 학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형렬	주민(목격자)	20070517	광주시 송정동 다방	진술서	사람들이 모여 있던 주막은 본량면 덕림리 412번지인가 그래요. 12살 먹은 주막집 아들까지 데려가고 여자는 안 데려갔어요. 그 때는 법에서도 3인 이상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 3인 이상 모일 때는 신고를 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고,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군인이 뒤따라 들어가 연행해 갔어요.



2. 가해 혐의자 및 가해 측 참고인 진술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5중대원과 월야지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가해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1소대 분대장, 중대장 권준옥의 연락병 김일호, 사건 당시 월야지서 토벌대장 오정인, 그리고 당시 소속 중대원으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또 당시 5중대 2소대원 박병인으로부터 장교, 동촌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표 3〉 가해 측 참고인 진술조사 현황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황학준	5중대1소대원	20060706	서울시 은평구	진술조서	입초 서던 병사가 침낭에서 자다가 난도질을 당해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정인	월야지서 토벌중대장	20061213	함평읍 원광한의원	진술조서	당시 중대장은 권준옥이었으며, 작전회의에는 3번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월야와 삼서면 경계지역 작전회의에 참석했는데,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중대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된 사람과 부역한 사람은 무조건 50명씩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일호	5중대장 연락병	20070215	제주시 자택	녹화	마을 앞 들판에서 징, 팽과리를 쳐 신경이 날카로웠다. 내가 월악리(남산외)에서 정일용을 살려주었다. 권준옥 중대장은 최덕신 사단장의 지시로 작전했기 때문에 최덕신에게 책임이 있다.
박병인	5중대 화기소대원	20070214	제주시 자택	녹화	광주에 가 얼마 안 있어 장성 쪽 연초제조창 부근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태극기가 휘날리고, 때로는 인공기가 휘날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중대가 기습당하여 아군 피해가 크니까 중대장이 나가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불을 지르고 마을부근을 없앤 것은 확실해요.
김공원	5중대 화기소대원	20070215	제주시 자택	녹화	마을에 가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돌아오면 살려주고, 도망하는 사람은 총으로 쏘았어요. 여러 명이 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창봉	5중대 중대본부원	20070215	제주시 이도1동	녹화, 녹음	해보에 갔던 시기가 추운 때였어요. 함평에 가서 불갑산 지구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기억은 납니다.
김준오	5중대1소대원	20070213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진술조서	해보에 있을 때 토벌작전을 한두 번 갔던 기억은 납니다. 작전성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군, 경 가족과 나머지 주민은 분리하여 데려갔습니다.
이평문 강제승 홍순홍	5중대 화기소대원	20070214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진술조서	공비출몰이 있어 현장에 가면 마을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취침 중 공비에게 습격당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죽창에 찔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길용	20연대 1중대원 (학도의용군)	20070119	함평읍 자택	진술조서	미처 올라가지 못한 진짜 빨치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산으로 도망간 민간인들이 많았습니다. 토벌작전 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간 민간인이었습니다.
나진수	함평경찰서 경찰	20070118	함평읍	진술조서	국군이 함평에 먼저 선발대로 들어왔으며, 학다리, 엄다, 수호리, 함평읍, 대동면으로 갑니다. 5중대는 장성이나 광주 쪽에서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중대본부에서 이오섭 나산면장이 항의하면서, 권준옥 중대장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3. 자료조사

-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1950, 336쪽.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8.
- 『보11사20연특별명령(갑) 제22호』와 권준옥 『자력표』
- 보병 제11사단, 『화랑약사』, 1976.
- 보병 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 보병 제20연대, 『부대약력표』,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 함평군의회, 『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 1997.



- 월간조선사, 『6·25사변 피살자 명부』, 2003.
-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실태보고서』, 한울, 2005.
- 「마구 터지는 대학살 秘史」, 『한국일보』, 1960. 5. 20.

4. 현장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5월 9일과 2007년 3월 14일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이용현 회장 등 유족회원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집결장소, 희생 장소에 대하여 사건발생 순서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들의 주장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IV. 조사결과

1. 사건의 전개과정

가. 조사내용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광산군 본량면, 장성군 삼서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중 총살, 타살 등의 방법으로 많은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지도에서 지역·날짜별로 5중대의 민간인 집단살해 과정을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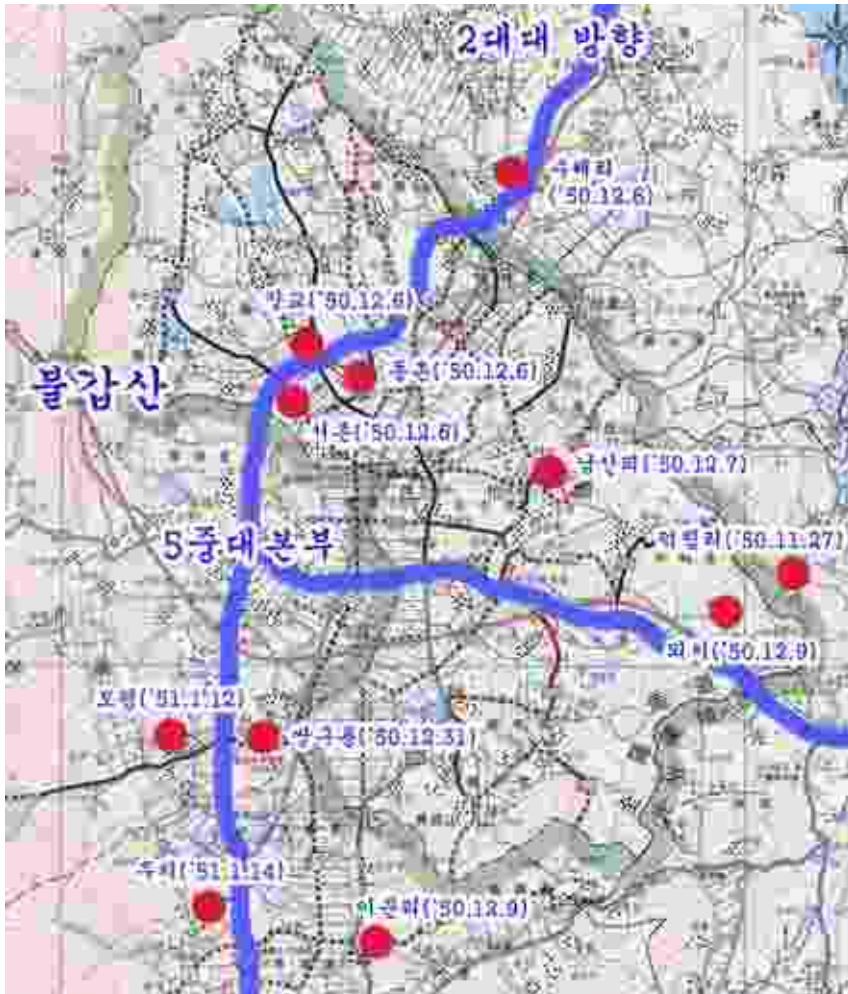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는 들판을 사이에 두고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다. 신청인과 참고인들에 따르면 1950년 11월 27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일어날 무렵 5중대 일부가 외치재에 초소를 운용하면서¹⁾ 야간에는 빨치산과 교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유형렬은 덕림리 주민 오봉근 외 6명이 사전신고²⁾를 하지 않고 모여서 새끼를

1) 신청인 이용현, 진술조서 4~5쪽, 2006.7.12.

2) 참고인 유형렬은 당시 계엄 하에서 3명 이상이 모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군·경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참고인 유형렬, 진술서 2쪽, 2007. 5. 17.

〈지도〉 함평11사단 사건 발생지역



꼬며, 화장실에 빠져 죽은 노루고기를 삶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집안으로 들이닥친 5중대 원들이 이들을 월야면 외치리의 5중대 초소로 연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형열이 목격한 희생자는 정진국(신청인 정양수) 오팔근(오칠근) 정성규(정종화) 오봉근(오춘열) 유태열(정옥순) 유재섭(유우현)과 주막 노파의 아들 정봉근(신청 외) 등 7명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가족들은 며칠 후 5중대 초소에서 시신을 수습해 왔다.³⁾

3) 외치재 분소에 있던 5중대 군인들이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5중대 본부로 떠나면서 마을에 들어와 외치재에 있는 시신을



신청인 정양수는 부친 정진국의 유골을 10년 후 이장을 하였는데, 두개골이 대여섯 개로 조각나 있어 총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⁴⁾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덕림리 북만동 주막(덕림동 412번지) 터를 현장 조사하고 참고인 및 신청인의 증언을 청취하였는데, 사건을 목격한 유형렬은 당시 5중대에 연행된 주민은 모두 빨치산 협력과는 무관한 시골 농민들이었다고 증언하였다.

2)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

신청인과 참고인에 따르면 1950년 12월 6일 동이 틀 무렵의 새벽 7가구가 거주하던 장교마을에 15~20명의 5중대 군인들이 들이닥쳐 집마다 불을 지르며 “살고 싶으면 마을 앞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쫓기다시피 몰려나온 주민들을 선별과정도 없이 총살하였다고 한다. 군인들은 사건 후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대본부가 있는 해보면 문장으로 가라고 소개명령을 내렸다.

이 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동촌마을 뒤에는 이 사건 직전인 12월 2일 국군과 빨치산의 전투에서 2명의 군인이 전사했던 한새들이 있고, 전투⁵⁾ 중에 일부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서 징과 팽과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던 사건이 있는데, 신청인·참고인들은 이 사건이 희생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증언하였다.

장교마을이 동촌마을 들머리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군인들이 동촌마을에 들어가면서 장교마을까지 토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양영언에 의하면 당시 5중대장은 월야면에서 해보면 가는 방향의 들판인 한새들⁶⁾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인을 화장하고 사병들 앞에서 복수를 다짐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4일 후 장교마을 주민 집단총살을 발생시킨 것⁷⁾으로 보인다.

신청인 서백수는 장교마을에서 안○○등이 빨치산 활동을 한 이유로 주민이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⁸⁾ 그러나 사건당일 안○○를 비롯한 마을의 좌익은 마을 내에 있지 않

수습하라고 해서 희생자들의 친척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시신은 각자 자기 집안의 선산에 매장하였습니다.(신청인 정종화 진술조서, 2006. 5. 17.)

4) 외치리와 우리 마을에 걸쳐 있는 칠봉산의 봉우리 중 외치리 뒤 봉우리에서 군인들이 내려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우리 집과 할머니(할아버지 두 번째 부인)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은 군인들이 문만 열어 보고 그냥 갔으나, 할머니 집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새끼를 꼬고 있었는데, 일곱 명을 새끼줄로 묶어 잡아갔습니다.(신청인 정양수 진술조서, 2006. 8. 1.)

5) 전투가 마을 앞 들판인 한새들에서 일어나 사건관련 유족들은 1950년 12월 2일의 국군과 빨치산의 전투를 한새들 전투라고 부르고 있다.

6)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6쪽, 2006. 6. 29.

7) 양영언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272쪽에서 재인용.

8) 신청인 서백수, 진술조서 5쪽, 2006. 5. 25.

았으며 집단총살 된 피해자들은 죄의과는 관련이 없는 동네 주민이었다.

신청인 강풍전은 당시 마을의 가구 수가 7가구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⁹⁾ 피해자 수는 22명¹⁰⁾, 15명¹¹⁾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3명은 9명이 총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안종필(신청 외)은 어머니 강영주의 등에 업혀 어머니와 함께 총에 맞았지만 살아남았고, 형 안종택은 사망하였다.¹²⁾

3)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

장교마을과 인접한 동촌마을은 80여 가구가 살고 있던 큰 마을이었다.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동촌마을에서도 장교마을 사건 발생일과 같은 12월 6일 동이 틀 무렵, 5중대 군인이 진입하였다. 5중대 군인 중 일부는 장교마을 쪽에서, 나머지는 서촌과 고실마을 방향에서 논을 가로질러 동촌마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신청인 곽상덕은 5중대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며 큰소리로 주민들을 동네 앞으로 모이라고 하여,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은 동네 앞 논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논으로 들어간 남자들을 총살하였다고 한다.¹³⁾ 그리고 남은 주민들에게 성냥을 나누어 주며, 마을에 내려가 미쳐 타지 않은 집에 불을 지르라고 하였다. 5중대는 이렇게 작전을 끝낸 뒤 살아남은 주민들에게 중대본부가 있는 해보면 문장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다.¹⁴⁾

신청인 곽상태는 장교마을에서 총소리가 들려오자 몇몇 청년들은 마을 뒤로 도망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⁵⁾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사건 며칠 전 마을 뒤에 있는 한새들 앞에서 있었던 5중대와

-
- 9) 감산택과 딸 2명, 우리집은 이모 이복례와 아들, 어머니와 동생 등 4명, 나산택에서 5명, 흥정택에서 2명, 강영주의 아들 안종택과 그리고 김연석이 사망하였습니다.(신청인 강풍전 진술조서 3쪽, 2006. 5. 16.)
- 10) 강영주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 학살』, 사회문화원, 2001, 203쪽에서 재인용.
- 11) 신청인 강풍전, 진술조서 3쪽, 2006. 5. 16.
- 12) 형님은 고환에 총알이 관통하여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업고 있어서 어머니 팔과 옆구리를 뚫고 제 엉덩이까지 총알이 뚫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한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인 안종필, 진술조서 3쪽, 2007. 3. 16.)
- 13) 새벽에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모두 동네 앞(현재 마을회관 건너 논)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을 앞으로 나가보니 군인들 일부는 길가에 모여 있고 일부는 서촌에서 논을 건너 동촌마을로 건너왔습니다. 군인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남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논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논으로 들어간 남자들을 기관총으로 사살했습니다.(신청인 곽상덕 진술조서, 2006. 7. 26.)
- 14)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2001, 사회문화원, 95쪽.
- 15) 당시 저는 만 17세였는데, 아침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마루에 나가보니 건너편에서 군인들이 우리 마을로 오는 것을 보고는 겁이 나서 옷을 갖춰 입고 뒷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신청인 곽상태 진술조서, 2006. 5. 25.)



빨치산의 ‘한새들 전투’를 사건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¹⁶⁾

더욱이 사건 전날인 12월 5일 밤 좌익들이 마을 뒷산 고개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팽과리를 치며, 3일 전에 한새들 전투에서 5중대 군인 2명을 전사케 한 후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만세를 부르는 소동을 피웠던 것을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¹⁷⁾

신청인 서백수는 이 마을 거주자 중에 빨치산 활동을 한 김○○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김○○은 마을에 있지 않았다.¹⁸⁾

5중대에는 G-2라 불리는 민간정보원들이 있어 주민의 동향을 파악해서 중대에 보고하였는데,¹⁹⁾ 이들은 마을의 좌익활동 내용도 그대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4)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

서촌마을은 해보면과 장성군 삼서면 간 도로변에 있는 마을이다. 1950년 12월 6일 5중대 군인 일부는 서촌마을을 거쳐 동촌마을로 갔다. 신청인 이덕부는 부친인 이연범이 그 날 아침밥을 먹을 무렵 5중대 군인 2, 3명에 연행되어 끌려가다 총살되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이재하는 자신의 아버지 이판금이 서촌마을 인근인 월야면 용암리 연화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중대본부가 있었던 해보면 문장으로 가다 서촌마을 부근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붙잡혀 총살되었다고 하였다.²⁰⁾

5)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

장교, 동촌, 서촌마을 등에서 각각 ‘작전’을 끝낸 5중대는 해보 장성 간 24번 도로를 따라 월야면 계림리 죽림마을과 장성군 삼서면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갔다. 그날의 상황에

16) 빨치산이 월야지사에 총을 쏘고 한새들을 거쳐 시목마을 쪽으로 도주했고, 월야지사에 주둔하고 있던 5중대는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목마을 쪽에서 빨치산이 사격을 했고 군인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민들이 시체를 보니 이미 옷을 벗겨 갖고 시신에다 죽창을 말뚝처럼 2, 3개씩 박아 놓았습니다. 아마 보도연맹 등 군·경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원한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새들 옆 냇가는 모래사장이었는데, 그 곳에 한 명이 죽어 있었고, 한 명은 시목마을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는데 모래사장에 있던 군인은 목 뒤에 총을 맞았습니다. 교전 당시 빨치산은 세 군데에 매복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시목, 내정, 그리고 신기마을 뒷산 등 세 곳에서 한새들을 내려다보며 총을 쏘았습니다.(참고인 이행하 진술조서, 2006. 6. 28.)

신기마을 앞에 한새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물을 공급하는 지하보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 군인들이 몸을 숨기고 전투를 하는데, 빨치산이 저수지 물을 터서 지하보에 물을 넣어버리니까 논 위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군인 2명이 죽었습니다. 지하보에 물을 넣은 것으로 봐서 동촌마을 사정을 잘 아는 빨치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새들 전투가 있고 2~3일 후에 군인들이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참고인 장두병 진술조서, 2006. 6. 28.)

17) 광상순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96쪽.

18) 신청인 서백수, 진술조서 7쪽, 2006. 7. 25.

19) 참고인 이능범, 진술조서 4쪽, 2006. 12. 13.

20) 신청인 이재하, 진술조서 3쪽, 2006. 8. 22.

대해 참고인 임화수는 이른 아침부터 월야면 쪽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놀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 주민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군인들을 환영하는 것이 낫겠으니 환영가자”고 제안하여 국군을 환영할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¹⁾

그러나 5중대는 마을에 들어와 곧바로 집과 뗏단에 불을 질렀으며 주민들을 마을 앞에 모아놓고 여자와 노인들에게는 집으로 들어가 해보면 문장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였다.

5중대 군인들은 이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자들을 선별한 다음 신죽마을 앞에서 3열로 정렬시킨 후 모두 총살하였다. 군인들이 임광진과 김병수, 심달섭, 김종섭, 임봉수 등 12명을 3열로 세워놓고 총을 쏘는 것을 목격²²⁾하였다고 임화수는 증언하였다.

사건이 일어났던 수해리 2구 신죽마을과 월곡, 양현 마을까지 합하면 70여 가구의 마을 중 절반 가까운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특히 신죽마을의 경우 거의 모든 집들을 불태웠습니다.²³⁾

또 임양수와 김수성 등 두 명의 주민은 월야면과 삼서면 경계에 있는 대도천에 다다른 군인들로부터 넘치는 냇물을 업어서 건너게 해달라는 명령을 받고, 이들을 건네주자 바로 그 군인들에 의하여 총살되었다.

이어 5중대 군인들은 신죽 월곡 양현 등 수해리 일대에서 소개작전을 마치고 오후에 중대본부로 복귀하기 위하여 월야면 정산리 신기마을에 이르러 가옥에 불을 질렀지만 태극기를 쫓고 환영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 환대하자 인명살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보면 금덕리 중대본부로 돌아왔다.²⁴⁾

이들 마을의 사건 원인에 대해 참고인 임화수는 “5중대가 진주할 무렵 이 동네 주민들이 목포 무안 나주방향에서 올라온 패잔 인민군에게 밥을 지어준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²⁵⁾ 즉 태청산에서 10여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마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국군은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조하였다고 의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태청산의 빨치산은 1950년 12월 초 근거지를 불갑산으로 이동하였다.

21) 참고인 임화수, 진술조서 2쪽, 2006. 6. 7.

22) 참고인 임화수, 진술조서 4쪽, 2006. 6. 7.

23) 신청인 노도출, 진술조서 4쪽, 2006. 5. 25.

24) 아버지가 대문에 태극기를 달아 놓았는데 군인들이 마당에 들어왔고, 그 중 대장으로 보이는 군인이 “이놈들 봐라, 태극기를 달아놓았네”하며 태극기를 자기 총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사람은 죽이지 말고 불이나 질러버려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마을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과 뗏단은 모두 타버렸습니다.(참고인 이행하 진술조서, 2006. 6. 28.)

25) 참고인 임화수, 진술서 2쪽, 2007. 5. 18.



6) 함평군 월야면 남산뫼 사건

사건현장에서 살아남은 정송모는 1950년 12월 7일 이른 아침 월야리 순춘, 송계, 괴정, 동산마을과 월악리 지변, 내동, 성주마을에는 이장을 앞세운 5중대가 집집마다 불을 지르며 주민들을 불러냈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⁶⁾ 군인들의 인솔로 월악리 지변, 내동, 성주마을 주민들은 팔열부정각 부근에 모여서, 월야리 주민들은 각각의 마을에서 남산뫼로 모여들었다. 군인들은 영문을 모르고 끌려나온 300~400명²⁷⁾의 주민을 17세 미만과 17~45세, 그리고 45세 이상²⁸⁾과 군·경 가족으로 분류하였다. 또 현장에서 실제 나이와는 관계없이 외모에 의해서 연령을 지레짐작하고 선별한 경우도 있었다고 정진천은 진술하였다.²⁹⁾ 이 과정에서 정병우는 자신을 호국군³⁰⁾ 장교라고 밝혔다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5중대장에 의해 권총으로 사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무공작대장 윤인식과 5중대장 권준옥의 연설³¹⁾ 후, 군인들은 17세 미만으로 분류된 청소년에게는 마을에 가서 불을 끄라며 내려 보냈다. 이어 45세 이상의 주민에게는 내려가서 즉시 해보 쪽으로 피난을 가라고 명령한 후 남아있는 17~45세 사람들을 따로 앉혀놓고 기관총과 소총을 일시에 발사했다. 모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악악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잠시 후 중대장은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줄 테니 일어나라”고 한 다음 일어난 사람을 향하여 다시 사격명령을 내렸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준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여 주민 몇 명이 일어나자 중대장은 이들을 마을에 내려가 불을 끄라고 한 뒤, 뒤에서 또다시 사격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 시체사이를 돌아다니며

26) 군인들은 역할에 따라 조 편성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군인들, 남산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군인들, 마을에 불을 지르는 군인들, 남산뫼 현장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은 철모에 흰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군인은 작업모에 흰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정송모 진술조서, 2006. 5. 26.)

27) 신청인 정남진, 진술조서 2쪽. 당일 남산뫼에 모인 주민의 수에 대해서는 250명에서 500명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집에 있는데 아마 9시 정도나 되었을 겁니다. 군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전부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1차적으로 지변마을의 새터(새터) 논 앞에 사람들을 집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산뫼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남산뫼 주변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있었으니까, 500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 정태환 진술조서, 2006. 6. 29.)

28) 선별의 기준이 되었던 연령대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총살 대상의 기준이 15~40세, 17~45세, 15~45세로 엇갈리고 있다.

29)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턱수염을 기르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봤을 때 나이가 많은 것으로 착각하여 노약자로 구분해서 살아났습니다. 형님은 빨리 성장을 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형님이 함께 끌려갔는데 아버지는 노인 처럼 수염이 덩수룩하게 나 있어 남산뫼에서 살아 내려왔고, 형님은 남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신청인 정진천 진술조서, 2006. 6. 28.)

30) 호국군은 전투 예비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 11월 30일 창설되어 1949년 8월 31일 해체되고, 역할은 청년방위대에 넘겨주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001.

31) 권준옥은 “너희들 같으면 도저히 시국을 안정해 나갈 수 없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정봉규 증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속기록』(전남판), 14쪽, 1960. 6. 8.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확인해서 사살하라”고 명령했다고 현장 생존자 정남숙은 증언했다.³²⁾

신청인 정귀례는 중대장이 한 젊은 여성을 중대본부로 끌고 가려하자, 그 여성의 아버지가 강력히 항의하자 부녀를 향하여 총을 쏘아 이들 모두를 살해하였다고 증언했다.³³⁾

남산피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주민들의 증언은 다소 엇갈린다. 다수의 주민들은 군인들이 이유 없이 들이닥쳐 집단 총살했다고 증언했다. 5중대의 정산리 주민들에 대한 집단총살사건 소식을 듣고 월야리, 월악리 주민들은 언제 군인이 마을에 들어올지 불안해했다. 이에 정일웅 등 주민 일부가 중심이 되어 5중대를 환영하기로 하고 태극기를 만들다가, 군인들의 총소리를 듣고는 정준채 등 몇몇은 월악리 쪽으로 도망쳤다고 한다.³⁴⁾ 즉 이들은 5중대에 의한 주민학살 소식을 이미 들었기에 5중대를 자극할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진술도 있다. 남산피 사건 바로 전날인 12월 6일 마을의 좌익과 소년단 일부 등 수십 명이 내동마을 뒤쪽에 있는 손동재에 올라 ‘김일성 장군 만세’ 등을 부르면서 군인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언도 있다.³⁵⁾

사건 당일 총살 현장에서 유족 중 일부는 시신을 수습하고, 일부는 생명이 남아있는 부

32) 지번, 내동, 동산, 순촌, 괴정, 송계, 성주 마을 주민을 남산피에 모이게 한 후 어린 학생들은 불을 지르라고 마을에 내려가게 한 후, 남아있는 주민들을 총으로 학살했습니다. 1차 총격 이후 살아남은 사람은 살려준다고 일어서게 한 후, 일어난 사람을 향해 2차 총격을 가했습니다. 저는 1차 총격에는 총을 맞지 않아서 살아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할 때도 일어나지 않아서 총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일어서게 한 후, 3차 총격을 가해서 모두 학살했습니다. (신청인 정남숙 진술조서, 2006. 5. 17.)

33) 군인들이 언니를 다른 곳으로 데려 가려 하니 아버지가 군인을 가로막으면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 딸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아버님과 언니를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큰 아기 두 명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옥을 보였다고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신청인 정귀례 진술조서, 2006. 6. 28.)

주민 중 ‘남자들은 15세 이상 45세까지’ 모두 나오라고 해서 한 쪽으로 모였고 여자들은 남편 없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 7, 8명을 골라냈습니다. 처녀들을 골라내는 도중 5중대가 동산마을 정맹모의 딸을 데려 가자 정맹모가 군인들을 가로막으며 ‘나를 죽이고 데리고 가라’고 항의하자 정맹모와 그의 딸을 동시에 총격하여 사살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없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입산자 가족으로 취급당하자 ‘남편은 결핵으로 몇 달 전에 죽었다’고 군인들에게 말했으나 오히려 ‘거짓말 하지 마라’며 개머리판으로 폭행을 당한 후 실신한 채로 15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있던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신청인 정상수 진술조서, 2006. 7. 31.)

34) 며칠 전 군인과 공비들이 교전을 했기 때문에 찾아 가지 않으면 공비 내지는 협조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태극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인 정일웅 진술조서, 2006. 5. 26.)

35) 내동마을 뒷산인 손동재에서 그 안날(12월 6일) 저녁에 봉화를 피우며 빨치산과 내동, 지번마을 주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좌익이나 빨치산이 소집시켜 나간 주민이 100여명 되었습니다. 빨치산도 10여명 있었습니다. 빨치산이 나오라고 해서 동네사람 모두 봉화를 피우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주민들은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빨치산은 아침에 모두 산으로 도망가고 주민들은 마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마을에도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봉화를 피우고 노래를 부른 곳은 외치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신청인 정남진 진술조서, 2007. 1. 19.)



상자를 집으로 데려왔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이들 대다수도 곧 사망하였다.³⁶⁾

7)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사건

신청인 정재선은 1950년 12월 초순 월야면 외치리 칠봉산 외치재에 5중대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³⁷⁾ 영광과 광주 간 도로인 이 곳은 5중대 군인들이 낮에는 보초를 서다 밤이면 중대본부로 철수하곤 하였다. 1950년 12월 9일 오후 군인들은 동네 이장을 앞세우고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마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고 한다.

외치재 주민은 사건 전에도 두어 번 정도 빨치산이 도로를 파손하고 공격하면, 그때마다 군인들에 의하여 마을 앞으로 불려나가 울력으로 도로보수를 해왔기에, 그날도 별다른 생각 없이 나갔다.³⁸⁾

사건현장을 목격한 정재선에 의하면 마을 앞 도로에 불려나온 주민들은 가족단위로 모여 있었고, 군인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보이는 주민 20명을 불러내자 청년 정기복은 군인들이 나오라고 지목하여도 머뭇거리면서 “부역한 사실도 없는데 왜 불려내느냐”고 항의하자 군인은 곧바로 정기복을 사살하였다고 한다.³⁹⁾ 이에 항의하는 당시 월야면 부면장인 정기복의 형 정복만에게도 총부리를 겨누었으나 무사하였다.

정기복을 현장에서 총살한 군인들은 나머지 주민 19명을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의 중대본부 쪽으로 끌고 갔으나, 종무소식이었다. 나머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보름 후 5중대가 해보에서 잠시 철수하였을 때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부근에서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17구⁴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이 시신을 수습해 대부분 현장에 매장하였다.⁴¹⁾ 목격자들은 시신 상태로 보아 총이 아닌 죽창 등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36) 남녀를 구분해서 앉았는데, 여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산뫼에서 즉사하지 않은 상태라서 당일 집안 어른들이 이불에 싸서 마을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양쪽 팔과 허벅지, 국부 등에 총을 맞았는데, 그날 저녁에 사망했습니다.(신청인 백삼남 진술조서, 2006. 7. 21.)

37) 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서 5쪽, 2006. 5. 17.

38) 집에 있는데, 이장이 군인들과 함께 골목골목 다니면서 나오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저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의 지시에 의해 도로 모퉁이에서 가족별로 나이 많은 사람이 앞쪽에 앉았습니다. 군인들은 총과 몽둥이 등을 든 군인 7, 8명이 있었습니다. 전부 모이고 나니, 군인 중 한 명이 주민들에게 “모퉁이 도로를 잘라 버렸으니 범인을 찾겠다, 마을 사람을 살리려면 자진해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불려나간 사람은 죽은 정기복을 포함해 20명이었습니다.(신청인 이용현 진술조서, 2006. 7. 12.)

39) 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서 3쪽, 2006. 5. 17.

40) 외치리 희생자 수에 대해 유족회는 18명의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희생자 수는 5중대 군인이 20명을 골라내 현장에서 정기복은 총살되었고, 나머지 19명 중 교사인 정기흥과 학련의 도움으로 풀려나 희생을 면한 정태진 등 2명을 제외한 두루샘 희생자는 17명이 맞다고 하였다.(2007. 6. 5, 유족회 정근욱 총무)

41) 마을에 50호 정도의 가옥이 있었기 때문에 추정하면 3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눈대중으로 짐작하여 젊은 남자들만 골라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청년 20명을 모아서 중대본부인 해보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끌려간 사람들은 당일 저녁에 중대본부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서, 2006. 5. 17.)

마을이 함평군과 광산군의 경계지역이고, 마을 앞 도로는 영광과 광주간의 주요 도로인데, 빨치산이 군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자주 파손하자, 군인들은 주민 중에서 혐의자를 색출하겠다고 하며,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불갑산에 있는 빨치산이 가끔 마을에 내려와 쌀, 소 등의 보급물자를 빼앗아갔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을 불갑산으로 데려가기도 하였다. 5중대는 사건 후에도 상당기간 외치재에 주둔하였다.⁴²⁾

8)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사건

이문리사건 신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1950년 12월 9일 오전 9시경 나산면 이문리 사정마을에 5중대 군인들이 몰려와 주민들을 이문초등학교에 모이게 하였다. 당시 이문리 김○○등 몇몇 주민은 인민군 통치 시기 강요에 의하여 부역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낮에는 대한민국에 협력하고, 밤에는 좌익들에게 협력해야 했다.⁴³⁾ 그러나 김○○는 사건 당시 마을에 있지 않았고, 그 후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에서 붙잡혀 징역 6년을 복역하였다.⁴⁴⁾

신청인 김수창의 진술에 의하면 군인들은 주민들을 이문리 이문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족별로 앉힌 다음 “군·경 가족은 나오라”고 하여 나머지 주민들과 분리하였다. 일반 주민 중 택호와 이름을 부르며 지목하면 가족들이 따라 나가기도 하였다. 군인들은 선별한 주민을 이문초등학교 옆 나산천변으로 데려가 총살한 다음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남은 주민들은 소개하였다고 한다.⁴⁵⁾

9) 함평군 해보면 쌍구룡 사건

쌍구룡 사건의 신청인과 참고인에 의하면, 5중대 군인들은 1950년 12월 31일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에 들이닥쳐 마을을 에워싼 채 불을 지르며 “죽지 않으려면 모두 나오라”고

42) 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서 5쪽, 2006. 5. 17.

43) 그 때는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낮에는 아군에 협력하고, 밤에는 밤사람들에게 협력해야 했던 시기였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재 작고)라고 좌익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인 오정수 진술조서, 2006. 8. 24.)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김○○)가 나산면사무소 면서기였습니다. 그래서 좌익사람들이 총을 들이대면서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갑산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라북도 김제 금구에서 경찰에 잡혀서 6년간 징역을 살고 나오셨습니다.(신청인 김승원 진술조서, 2006. 7. 12.)

44) 신청인 김승원, 진술조서 6쪽, 2006. 7. 12.

45) 저는 군인들이 돌아다니며, 마을 앞 학교운동장으로 집합하라고 한다며 어른들이 와서 이야기하여 따라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군인들이 가족별로 앉으라 하였습니다. 경찰가족과 군인가족은 주민들과 구분하여 앉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는 기관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부락사람 여럿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 중 “누구를 데리고 와라, 누구를 가리켜라” 하였습니다.(신청인 김수창 진술조서, 2006. 8. 3.)



하여 주민을 해보중앙초등학교 부근 쌍구룡으로 집결시켰다고 한다.

군인들은 끌려나온 주민들 중 남자들을 골라 해보중앙초등학교 옆 길가에 앉혀놓고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주민 중 장진섭이 일어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느냐고 항의하자 군인은 대검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고 총살하였다. 남자들이 모두 죽자, 배수로 쪽에 앉아 있는 여자들을 도로건너 밭으로 한 명씩 가도록 한 후 하나하나 총으로 쏘았다. 한 주민이 군경가족도 죽이느냐고 묻자 그때부터 군경가족을 한쪽으로 끌라낸 다음 총살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⁶⁾

마을 사람들을 사살한 다음 따라온 청년방위대원(청방)을 시켜서 시체를 방죽에 던져 넣었다. 본래 방죽은 깊이가 한 길은 되었지만 겨울이라 물의 깊이가 무릎 정도 되었다. 이 과정에서 넘어져 있던 이금남은 살아있는 채로 방죽에 던져 넣은 청년방위대원의 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⁴⁷⁾

사건 당시 성대마을 원주민들은 대부분 광주 등 외지로 피난을 한 상태였으며 거주자의 대부분은 불갑산 용천사 아래 마을인 광암리에서 군·경의 명령으로 소개되어 온 사람들이었다.⁴⁸⁾

신청인 장재수는 사건 현장인 성대마을과 광암리의 거리가 5킬로미터에 불과했기 때문에 식량 등을 가져오기 위해 이들은 광암리에 왕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⁹⁾

또 청방으로 근무했던 참고인 김석주는, 사건 하루 전날 5중대는 성대마을 너머에 있는 천주봉으로 토벌 작전을 나갔다가, 어수산과 월양산 방향에서 빨치산들이 총을 쏘아 군인

46) 신청인 박용원, 진술조서 5쪽, 2006. 7. 12.

47) 시신 1구당 청방요원 4명이 달라붙어 시신을 방죽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방이 옆으로 오자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여 청방이 죽은 사람처럼 들어서 방죽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방죽 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 같은 동네 청방이 “나오면 죽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총소리가 나지 않으면 나오라고 하여 군인들이 철수한 후에 살아남은 마을사람을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신청인 이금남 진술조서, 2006. 7. 14.)

48) 성대마을에는 원래부터 살던 사람 중 부유층은 광주로 미리 피난을 가 빈집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빈집에 불갑산 밑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경찰이 낮에 와서 빨치산에게 부역을 하였는지 등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신청인 김형술 진술조서, 2006. 7. 11.)

49) 저는 해보면 광암리 운암에서 대대로 살았으나 한 달 전 경찰이 소개령을 내려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로 왔습니다. 운암마을 하고 거리가 가까워 식량이라도 가져다 먹기 위해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은 성대마을로 소개되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모평마을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리면서 군인, 청방들이 마을에 진입하고, 공포탄을 10여발, 쏘고 집집마다 불을 지르면서 살려면 빨리 마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나갔습니다.(신청인 장재수 진술조서, 2006. 7. 13.)

우리 마을에는 불갑산 근처 해보면 산내리, 광암리 사람들이 소개되어 와서 살았습니다. 원래 성대에 살던 사람은 밤이면 빨치산이 내려와 주민들을 못살게 굴어 피난을 갔습니다. 또 군인, 경찰가족은 피난을 갔습니다.(신청인 김중희 진술조서, 2006. 7. 13.)

저는 사건 40일 전에 광암리에서 성대마을로 나왔는데 식량 등을 가져다 먹기 위하여 8, 9번쯤 광암리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신청인 박용원, 2007. 6. 8. 전화탐문)

들이 더 진격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고 증언했다.⁵⁰⁾ 군인들은 성대 마을에 빨치산이 있거나 협조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민들을 집단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10)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모평 사건

신청인과 참고인에 의하면 1951년 1월 12일 5중대는 대창리 성대마을에서 가까운 인근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주민을 집단총살 하였는데, 군인들은 마을에 들어가 집집마다 불을 지르며 “살려면 쌍구룡쪽으로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는 나오는 대로 총을 쏘았다고 한다.

윤경중 등 신청인들은 모평마을이 100여 가구로 다른 마을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사회에 진출한 사람도 많았지만, 지리적으로 불갑산과 가까워 빨치산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고 한다.⁵¹⁾

더구나 사건 전날 밤에는 빨치산들이 모평마을 뒤쪽 비녀봉에서 5중대 본부를 향하여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⁵²⁾ 신청인들은 빨치산의 중대본부 공격이 이 날 집단총살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사건

이계백 등 신청인에 의하면 모평마을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951년 1월 14일 5중대는 나산면 우치리 소재마을에 와 집안에 있던 주민들을 마을 앞으로 집결시키고 무차별적으로 총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치리 청년들은 이미 월야면 일대와 해보 쌍구룡, 그리고 상곡리 모평마을에서 발생한 주민집단총살사건을 알고 있던 터라 마을에서 피해버렸다고 증언했다.⁵³⁾ 따라서 남아 있던 노약자와 여자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이 마을 앞으로 끌려나와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집단으로 총살당하였다.⁵⁴⁾ 이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집에 들

50)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10쪽, 2006. 6. 29.

51) 1950년 11월 말부터 모평마을을 5중대가 소개시켜 이웃마을인 해보면 용산리 소성마을을 누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장성에 주둔하던 8중대로부터 모평마을에 들어가도 된다는 연락이 와 1월11일에 들어갔습니다. 한 10일 정도 되는데, 5중대가 당시 해보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었고, 이 때 8중대가 해보로 들어와서 들어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8중대는 바로 떠났고, 얼마 후 5중대가 들어왔습니다.(신청인 윤경중 진술조서, 2006. 5. 18.)

그 때는 굶어 죽을 판이어서 없는 사람들이 그 곳에 남아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원래 모평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다 나가 버렸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노인들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신청인 노병량 진술조서, 2006. 7. 12.)

52)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127~128쪽.

53) 국군들이 들어다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건 발생 하루 전에 큰집 식구들과 큰누나, 작은누나, 본인은 미리 피신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가 피신한 장소를 확인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갓 태어난 동생을 데리고 있던 어머니와 다리가 불편한 외삼촌은 집에 있다가 군인들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신청인 이계백 진술조서, 2006. 5. 18.)

54) 5중대 군인들이 오전 10시 30분경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모아 놓고 기관총을 쏘아 주민 중 어린이 8명, 노약자 6명, 불구자



리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 빨리 피하라”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도망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희생되었다고 한다.⁵⁵⁾ 우치리 사건은 불갑산 용천사 아래 대각리 주민이 피난을 나올 수 있는 거리여서, 이들이 대각리에 왕래하며 빨치산에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단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우치리 사건이 발생하자 이오섭 나산면장은 5중대장 권준옥 대위를 찾아가 주민총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 항의 이후 5중대에 의한 이 지역 집단총살은 중단되었다.⁵⁶⁾ 이 사건에서 마을별 집단총살사건이 우치리에서 끝난 것은 시기적으로 토벌작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나산면장의 항의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2)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인근지역 소규모 희생 사건

5중대가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에 주둔하는 동안 소규모 민간인총살사건이 인근 여러 동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빨치산이 야간에 이들 동네에 내려와 식량 등을 가져갔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군으로부터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희생을 당하였다. 대표적으로 안길원의 부 안해동, 이기신의 형 이성신, 최병수의 숙부 최남휴 등이 그 사례에 해당된다.⁵⁷⁾ 이재문의 부 이정섭의 경우 아들이 인민군 통치시기에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살해되었다고 한다.⁵⁸⁾ 윤석주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와 삼촌은 인민군 점령시기 좌익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경찰이었던 아버지 윤일두는 마을 주민의 해코지로 5중대 군인에 의하여 도끼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⁵⁹⁾

1명, 부녀자 5명 등 20명을 현장에서 총살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2명 중 1명은 며칠 후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도 59세였는데,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정유라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87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녀자 5명 중 3명은 젓먹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신청인 이계준 진술조서, 2006. 5. 17.)

55) 신청인 김재경, 진술조서 5쪽, 2006. 8. 9.

56)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2001, 사회문화원, 138쪽.

57) 아버지 안해동이 1950년 11월 29일(음)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구장터에서 5중대 소속 군인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고모 저 어린 여동생 그렇게 5식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신청인 안길원 진술조서, 2007. 1. 18.)
저의 형 이성신이 1950년 12월 13일(음 11월 5일) 해보면 금덕리 사자등마을에서 5중대원에게 희생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형을 잡아다 해보면 금덕리 밀재 밑에서 죽여서 묻었다 합니다.(신청인 이기신 진술조서, 2006. 5. 25.)

돌아가신 최남휴는 저의 숙부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여동생이 사는 해보면 고모리로 가다 마을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군인들에게 붙잡혀 모진 구타를 당한 후 마을 뒤 저수지 옆으로 끌려가 총살당하는 것을 저의 고모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신청인 최병수 진술조서, 2007. 1. 18.)

아버지 김병갑은 1950년 12월 27일(음 11월 19일) 5중대 군인들에게 끌려가 해보면 문장리 고모리 뒷산에서 희생당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른 사람들이 고모리 뒷산에, 면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서 한 군데에 임매장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현장에 가 옷가지를 보고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신청인 김현필 진술조서, 2007. 1. 19.)

58) 문장 이정섭의 집에 숨어 지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외치리에서 중대본부로 끌려온 18명의 주민과 함께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중사가 월야 외치에서 데려온 주민과 저의 부모님을 죽이는 것을, 당시 감찰부장 이종범이 현장에서 목격하여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했습니다.(신청인 이재문 진술조서, 2006. 6. 14.)

해보면 금덕, 문장리 등 중대본부 인근뿐만 아니라 5중대 군인들의 이동로에서는 5중대원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도 빈발하였다.⁶⁰⁾ 또 신청인 이만희는 이동선 등 숙부 4명⁶¹⁾이 5중대에 의하여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덕행의 부 이손동도 금덕리 두루샘 부근에서 5중대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한다.⁶²⁾

1960년 4대 국회의 함평군 현지조사에서 금덕리 이장 강철현은 이 지역에서 5중대에 의하여 주민 43명이 죽었다고 증언하였다.⁶³⁾

이외에도 5중대가 함평군 해보면에 주둔하는 기간 중 군인들의 이동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빨치산으로 의심받거나,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빈발하였다.⁶⁴⁾

59) 아버지 윤일두가 음력 1950년 11월 17일(양력 12월 25일) 오전 10시경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새다리목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도끼로 두상을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중대 취사반장이 도끼로 난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신청인 윤석주 진술조서, 2007. 1. 18.)

60) 아버지 김기만, 어머니 정약순, 형수 강정순(20세의 미망인), 여동생 김인순이 1951년 1월 10일 해보면 금덕리 고두마을 뒷산에서 5중대 화기소대원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1951년 1월 9일 낮 가택수색 하다 형수에게 따라 오라 하였으나 아버지가 야단을 쳐 되돌아갔다가 다음날 오전 7시30분경 군인 5명이 집에 와 일가족 5명을 5중대 화기소대 야전본부가 있는 고두마을 앞 하천골로 끌고 갔는데, 저는 도망쳤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형수, 여동생은 군인들에 의해 금덕리 고두마을 뒷산 모퉁이로 끌려가 오전 10시경 총살되었습니다.(신청인 김홍빈 진술조서, 2007. 1. 18.)

61) 인우보증인 윤주원, 이재기와 전화 탐문한 결과 이동선, 이동기의 희생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정열, 이정기의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우보증인 윤주원, 이재기 전화탐문, 2007. 4. 20.

62) 아버지 이손동은 1950년 12월 2일(음 10월23일) 5중대 군인들이 전투 후 해보 문장으로 복귀하던 중 아버지를 끌고 나가 두루샘 부근에서 죽였고, 할아버지는 이들을 찾으러 나갔다 해보 문장리 구장터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습니다.(신청인 이덕행 진술조서, 2007. 1. 17.)

63)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회속기록」(전남판), 10쪽, 1960. 6. 8.

64) 오빠 이병옥은 공무원으로 전하에 살았는데, 1950년 12월 6일 광주로 피난가다 광산군 삼도면 도덕리 삼도지서 앞에서 5중대 군인에게 붙잡혀 12월 7일경 사살되었습니다. 같이 피난가던 정수모가 함께 잡혔다가 살아 돌아와 알려주어 알았습니다.(신청인 이옥희 진술조서, 2007. 6. 8.)

외삼촌 박명수가 음력 1950년 12월 10일 월야면 계림리 금치에서 장성에서 공비소탕 작전을 벌이고 해질 무렵 귀대하던 5중대 군인에게 중대본부로 연행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식량을 가지러 와서 외할머니에게 들어 알았습니다.(신청인 장동규 진술조서, 2007. 1. 18.)

셋째 고모는 신희 초였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피난 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군인들이 집을 포위하여 할아버지와 셋째고모를 중대본부로 연행하려 하자 할아버지는 항의하였고, 5중대원은 할아버지를 사살하였습니다. 고모는 그 곳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신청인 노병철 진술조서, 2007. 1. 19.)

아버지 이규옥이 1950년 12월 5일 월야 서촌에서 5중대 군인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친척 여동생이 밖을 내다보는데, 군인들이 재수 없이 계집애가 밖을 내다 봤다며, 아버지를 고실 앞산에서 총살하였습니다.(신청인 이재삼 진술조서, 2007. 1. 18.)

아버지 정성면은 1950년 11월 27일 5중대 군인들이 마을에서 아버지를 끌고 외치재 5중대 초소로 데려가 그곳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며칠후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시신을 지게에 지고 오는 것이 기억납니다.(신청인 정병화 진술조서, 2007. 7. 13.)

1950년 11월 28일에 아버지 정창기를 비롯한 4명이 전하 뒷산에서 5중대 군인에게 총살당하였습니다. 학살소문이 나 아버지는 광주로 피신하기 위하여 친척 2명, 마을사람 1명과 함께 마을 뒷산으로 갔는데, 마침 5중대 군인에게 발견되어 아버지 등 4명이 도망을 가자 쫓아와 총살하였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인 정윤현 진술조서, 2006. 8. 18.)

숙부 서이섭(양부)이 5중대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인공 때 마을 사람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불침번과 보초를 썼는데, 수



나. 소결

함평11사단사건은 국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공비토벌 작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으로 활동하였거나,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의심하여 집단 또는 소규모로 총살·살해한 사건이다.

1950년 11월 27일 덕림리 사건은 주민들이 신고 없이 주막에 모여 새끼 꼬는 것을 5중대 군인들이 수상히 여겨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12월 6일 월야면 정산리 장교, 동촌마을 사건과 12월 7일의 남산피 사건은 한새들 전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2월 2일의 한새들 전투 3일 후 동촌마을 뒤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징과 팽과리를 치며 ‘승리’를 자축한데 대한 보복행위였다.⁶⁵⁾ 또 수해리 사건은 태청산에 있던 빨치산이 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조달해가자 주민들이 이들에게 협조하였다고 의심하여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6일 저녁 월야리와 월악리 주민들과 소년단원들이 좌익들의 강요로 손동재에서

복 후 군인들의 추궁에 숙부도 잡혀갔습니다. 해보면사무소 창고에 갇혔다가 1, 2일 있다 해보리 산비탈로 끌고 가 죽였는데, 당시 20~30명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인 서동기 진술조서, 2007. 1. 19.)

양부 봉진성이 1950년 12월 5일 해보면 문장에서 5중대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양부는 피신을 갔다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와 있었는데, 군인과 경찰이 생포한 빨치산 연락병을 데려와 “동조지를 알려 주면 살려 주겠다”고 하자 양부님을 손가락으로 지목하여 해보지사에 구금하였습니다. 며칠 후 군인 2명이 빨치산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자 해보지사에 구금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총살하였습니다.(신청인 봉석 진술조서, 2007. 1. 19.)

아버지 윤봉연이 1950년 12월 21일 해보 쌍구룡 중앙초등학교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한청이었는데, 제가 군대 갈 예정이어서 저를 만나러 쌍구룡에 나오셨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총살되었습니다.(신청인 윤무병 진술조서, 2007. 1. 17.)

숙부 이달성은 1950년 11월 26일(음 10월 17일) 월야 용월리 내새(채임등)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숙부는 아둔하여 왕골 돗자리를 만드느라 그늘진 방에서 작업을 하여 얼굴이 창백하고 수염이 길었다고 합니다. 숙부 등 3명을 빨치산이라 생각하여 총살하였다고 합니다.(신청인 이국범 진술조서, 2007. 1. 19.)

아버지 배편수는 1950년 12월 1일(음력) 5중대원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월야 전하에서 마차에 짐을 싣고 송정리로 가다 고실에서 차를 타고 가던 임현택이라는 5중대 군인에게 잡혀 해보면 귀말에서 총살되었습니다.(신청인 배상호 진술조서, 2007. 1. 19.)

친형 김영휴가 1950년 12월 7일 월야면 월야리 남산피 사건 후 돌아가던 5중대원에게 평촌에서 문장리 중대본부로 연행되어 죽었습니다. 장형 김영추와 집에 있었는데, 5중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 풍독이 올라 1년 반 후 돌아가셨고, 작은형 김영휴는 5중대원에게 잡혀가 죽었습니다.(신청인 김영만 진술조서, 2007. 1. 17.)

4중간 양대지는 1950년 12월 5일(음력) 월야면 용암리 은암 뒷산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마금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호적상 이름은 대자여서 제적부에는 대자로 적혀 있습니다. 4촌 형의 탈상을 치르고 주민 20여 명이 피난하다 6, 7명이 용정리 용수마을 이장범의 사당에 있었고 나머지 15, 16명은 미리 피난하였는데, 돌아가신 아저씨(양대자)와 저는 방에 있었는데, 동네 어린이가 “5중대가 몰려온다”고 하여 나갔다가 돌아와 뒤로 빠지다 잡혀 죽었습니다.(신청인 양윤식 진술조서, 2007. 3. 15.)

65) 그 전날 군인 2명이 신기마을에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들이 봉화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장교마을에 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인 서백수 진술조서, 2006. 7. 25.)

어머니와 이모가 밥을 하는데 5중대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큰소리로 “대한민국 군인이 들어왔다. 모두 밖으로 나와라”해서 나갔습니다. 군인들이 연설하는 줄 알고 작은 이모는 아기를 업고 맨 앞에, 어머니는 아기를 업고 이모 뒤에 앉았습니다.(신청인 한정옥 진술조서, 2006. 5. 25.)

봉화불을 피우며 만세를 부른 것이 다음날 5중대가 남산피에서 벌인 집단총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1950년 12월 31일의 쌍구룡 사건과 1951년 1월 12일 모평 사건 그리고 1951년 1월 14일 우치리 사건은 소개나온 주민들이 식량 등을 가져오기 위하여 마을을 왕래하자 5중대가 이들을 빨치산 내통자로 의심한 나머지 군·경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선별 없이 총살한 사건이다.

그리고 모평마을 사건은 전날 밤 비녀봉에서 빨치산이 중대본부를 공격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또 1950년 12월 9일 외치리 사건은 빨치산의 5중대에 대한 도로 교란작전이 주민총살의 빌미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나산면 이문리 사건은 좌익·부역혐의자 색출 과정에서 집단 총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월 14일 나산면 우치리 사건은 공비소탕작전 과정에서 벌어졌고, 5중대 진격소식이 전해오자 젊은이들이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어 희생자가 대부분 노약자들이었다.

2.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규모

가. 사건별 희생자의 희생규모⁶⁶⁾

1)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

〈표 4〉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오봉근	남	37	농업	오춘열	1969.3.2. 사망일 기재
2	정진국	남	42	농업	정양수	1971.4.25. 사망일 기재
3	유재섭	남	23	농업	유우현	1950.10.18. 사망일 기재
4	유태열	남	30	농업	정옥순	1957.8.20. 사망일 기재
5	정성규	남	36	농업	정종화	1953.10.17. 사망일 기재
6	오팔근	남	15		오철근	1955.2.4. 사망일 기재

66) 희생자 확정과정에서 제적부에 사망사실이 등재가 안 된 경우, 신청인 주변을 탐문하였으며 제적부 미제출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적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또 결혼 후 자녀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된 경우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된 경우는 인우보증, 족보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희생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유를 명기하였다.



1950년 11월 27일 발생한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의 경우 목격자 유형렬, 신청인 오춘열 등 신청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생자는 오봉근 등 6명으로 확인되었다.⁶⁷⁾

확인된 희생자는 오봉근(다-1223) 정진국(다-1224) 유재섭(다-1225) 유태열(다-1226, 7238) 정성규(다-1227) 오팔근(다-1228, 7239)이다.

2)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을 신청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양순의 가족 5명을 포함한 9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 박양순의 동생 박아기와 한정옥의 남동생 한아기, 그리고 강풍전의 남동생 강아기 등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 5〉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박두남	남	51	농업	박양순	1955.11.23. 사망일 기재
2	김순란	여	21	농업	박양순	사망사실 미기재
3	박종한	남	15		박양순	1955.8.10. 사망일 기재
4	박순심	여	12		박양순	1961.9.10. 사망일 기재
5	박아기 ⁶⁸⁾	여	1		박양순	호적 미등재
6	이복녀	여	34	농업	한정옥	1949.10.5. 사망일 기재
7	한아기	남	1		한정옥	호적 미등재
8	이순득	여	29	농업	강풍전	1948.4.11. 사망일 기재
9	강아기	남	1		강풍전	호적 미등재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의 확인된 희생자는 박두남, 김순란, 박종한, 박순심, 박아기(다-1202), 이복녀 한아기(다-1203), 이순득 강아기(다-1204)이다.

3)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서백수의 부 서

67) 희생자 중 주막 노파의 아들 정봉근의 유족은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

68) 이 보고서의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희생자 신원이 제적부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만동 등 11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동촌마을 사건의 확인된 희생자는 서만동(다-1196), 서석암(다-1197), 곽판용(다-1198), 곽석연(다-1199), 서용기(다-1200), 곽지연(다-1201), 박소남(다-1205), 김삼금 김초순 김성애 김상울(다-2869)이다.

〈표 6〉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서만동	남	49	농업	서백수	1960.5.10. 사망일 기재
2	서석암	남	51	농업	서창복	1968.1.10. 사망일 기재
3	곽판용	남	51	농업	곽진관	1968.10.27. 사망일 기재
4	곽석연	남	43	농업	곽상태	1950.11.25. 사망일 기재
5	서용기	남	49	농업	서창호	1951. 7. 사망일 기재
6	곽지연	남	42	농업	곽상덕	사망사실 미기재
7	박소남	남	44	농업	박종인	1950.10.27. 사망일 기재
8	김삼금	남	45	농업	김희태	1957.5.8. 사망일 기재
9	김성애	남	37	농업	김희태	1957.5.5. 사망일 기재
10	김초순	여	13		김희태	1957.5.10. 사망일 기재
11	김상울	남	12		김희태	1951.11.10. 사망일 기재

4)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덕부의 부 이연범 등 2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촌마을 사건의 희생자는 이연범(다-1318), 이판금(다-3487)이다.

〈표 7〉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이연범	남	31	농업	이덕부	1950.1.5. 사망일 기재
2	이판금	남	42	농업	이재하	일본인 여자 희생 목격. 1952.5.6. 사망기재



5) 월야면 계림리·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계림리와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임일수의 사촌형 임양수를 포함하여 9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8〉 월야면 계림리·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임봉수	남	27	농업	임일수	사망일 1950.10.27.(양 12.6) 등재
2	임양수	남	24	농업	임일수	사망일 1950.10.27. 등재
3	임선진	남	40	농업	임일수	사망일 1950.10.27. 등재
4	김병수	남	35	농업	김매화	사망일 1950.12.8. 등재
5	김수성	남	26	농업	김주섭	실제이름 김용선, 1953.8.9.사망일 기재
6	노병훈	남	27	농업	노도출	사망일 1951.2.5. 등재
7	이수범	남	33	농업	이종철	사망일 1960.5.25. 등재
8	노병조	남	23	농업	유귀복	사망일 1950.12.27. 등재
9	노병식	남	25	농업	노선균	사망일 1968.10.8. 등재
10	노준기	남	53	농업	노필귀	사망일 1950.11.10.로 등재

참고인 임화수는 목격한 희생자가 12명이라고 하였지만, 본인도 희생자의 구체적 신원에 대하여서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희생자 김수성은 실제 이름과 호적상 이름 사이에 착오가 있어 수정진술을 들었다.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와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시목마을 사건의 희생자는 임봉수(다-1188), 임양수(다-1189), 임선진(다-1190), 김병수(다-1191), 김수성(다-1192), 노병훈(다-1193), 이수범(다-1194), 노병조(다-1195), 노병식(다-1196), 노준기(다-1207)이다.

6) 월야면 남산뒀 사건

1950년 12월 7일 발생한 남산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민봉의 양모 김갑순을 포함하여 76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고, 정길호의 모 김유순 등 8인은 사건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정남숙은 현재 생존해 있다.

이중 정진덕 외 21명의 사망사실은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발행한 『6·25사변 피살

자 명부』⁶⁹⁾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이 명부에는 정진덕 등 22명이 좌익 및 빨치산에 의한 피살자로 기재되었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 5중대에 의한 희생자임이 확인되었다.

또 신청인 정진두의 고종사촌 정재덕은 제적부 확인결과 군인신분으로 전투 중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5중대에 의한 희생자에서 제외하였다. 신청인 조사 과정에서 남산피 사건의 희생자가 131명이라는 진술도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표 9〉 월야면 남산피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갑순	여	34	농업	정민봉	1966.2.5. 사망일 기재
2	정진덕	남	19	농업	정진덕	피살자명부 ⁷⁰⁾ 기재, 1950.11.20. 사망일 기재
3	최용례	여	38	농업	정상수	1950.11.28. 사망일 기재
4	정천수	남	14		정상수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28. 사망일 기재
5	정종문	남	17	농업	정기문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3. 사망일 기재
6	심용기	남	12		심춘택	1957.4.20. 사망일 기재
7	정길문	남	31	농업	정근우	사망사실미기재
8	정동수	남	20	농업	정근한	피살자명부 기재, 1969.11.2. 사망일 기재
9	정계환	남	13		정태환	1962.8.5. 사망일 기재
10	정방섭	남	21	교사	정총섭	1950.10.27. 사망일 기재
11	정병모	남	18	농업	정득모	1957.10.27. 사망일 기재
12	정진철	남	19	농업	정홍순	제적부 사망 미 등재, 피살자명부 기재
13	정동모	남	20	농업	정부덕	피살자명부 기재, 1951.10.28. 사망일 기재
14	정민모	남	19	농업	오공숙	1949.11.28. 사망일 기재
15	정진발	남	20	농업	이순례	1951.11.5. 사망일 기재
16	정창진	남	13	농업	정진천	1952.9.9. 사망일 기재

69) 1952년 3월 31일 공보처 통계국에서 6·25 기간에 좌익, 빨치산 및 인민군에 의하여 피살된 민간인의 실태를 조사한 정부문서이다. 명부는 피해자를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 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 59,964명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피살된 인원이 43,511명으로 7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명부에 따르면 함평군 피해 인원은 1,954명이다.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7	정재호	남	22	농업	정재문	피살자명부기재, 1950.12.10. 사망일 기재
18	김순애	여	17	농업	김선행	1950.10.19. 사망일 기재
19	김재만	남	18	농업	김재익	1957.1.20. 사망일 기재
20	정옥모	남	30	농업	정진임	1961.8.3. 사망일 기재
21	정기모	남	20	농업	정진임	피살자명부 기재, 1961.7.25. 사망일 기재
22	정재환	남	21	농업	정병호	1950.10.29. 사망일 기재
23	정중진	남	23	농업	정계수	피살자명부 기재, 1962.7.8. 사망일 기재
24	정문모	남	33	농업	정진정	1962.6.27. 사망일 기재
25	정양모	남	39	농업	정공진	피살자명부 기재, 1969.3.14. 사망일 기재
26	정진봉	남	43	농업	정철진	피살자명부 기재, 1966.12.20. 사망일 기재
27	정병모	남	18	농업	정응모	1950.10.18. 사망일 기재
28	정근모	남	16	농업	안춘자	1955.2.5. 사망일 기재
29	김유순	여	1928년생	농업	정길호	부상 (1998년 사망)
30	정동석	남	19	농업	정석봉	1955.3.22. 사망일 기재
31	정동섭	남	18	농업	정석봉	피살자명부 기재, 1956.11.11. 사망일 기재
32	이사석	남	38	농업	이경범	체적부 사망 미등재
33	정홍섭	남	30	농업	정윤철	피살자명부 기재, 1949.11.18. 사망일 기재
34	정봉수	남	47	농업	정진섭	1963.12.27. 사망일 기재
35	정달모	남	1930년생	농업	오영남	부상 (1997년 사망)
36	정진철	남	28	농업	정방수	1962.3.12. 사망일 기재
37	이점동	남	40	농업	이재환	1956.7.5. 사망일 기재
38	정남섭	남	39	농업	정기훈	1951.10.18. 사망일 기재
39	정봉섭	남	23	농업	정운섭	1950.11.5. 사망일 기재
40	정근모	남	17	농업	정송모	1965.10.25. 사망일 기재
41	윤필중	남	18	농업	윤만중	1952.2.9. 사망일 기재
42	정상휴	남	36	농업	윤납순	1950.10.10. 사망일 기재
43	정익모	남	44	농업	정진자	피살자명부 기재, 1960.3.10. 사망일 기재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44	조병혁	남	31	농업	조병술	1952.8.16. 사망일 기재
45	정병선	남	31	농업	정을호	1961.3.5. 사망일 기재
46	정진차	남	15		정진재	1950.10.30. 사망일 기재
47	정현수	남	17	농업	정공열	1956.10.20. 사망일 기재
48	정현기	남	13		정복기	1964.12.5. 사망일 기재
49	이계순	여	17	농업	이옥희	체적부 사망 미등재(혼인신고)
50	정해로	남	16	농업	정옥기	1962.1.6. 사망일 기재
51	정영관	남	36	농업	정창호	1953.6.14. 사망일 기재
52	김영섭	남	32	농업	김선영	1961.11.10. 사망일 기재
53	정봉휴	남	37	농업	정유순	1950.10.18. 사망일 기재
54	정재복	남	27	농업	정재모	피살자명부 기재, 1955.3.1. 사망일 기재
55	정흥섭	남	18	농업	정재모	피살자명부 기재, 1957.10.5. 사망일 기재
56	정재섭	남	28	농업	정은균	피살자명부 기재, 1970.5.20. 사망일 기재
57	정병섭	남	30	농업	정경숙	1953.10.8. 사망일 기재
58	김명자	여	18	농업	정경숙	1952.10.10. 사망일 기재
59	정광열	남	26	농업	백삼남	사망사실 미기재
60	정말동	남	21	농업	백삼남	1957.7.5. 사망일 기재
61	정남숙	남	1928년생	농업		부상
62	정진을	남	30	농업	정영수	1951.11.8. 사망일 기재
63	정동휴	남	25	농업	정영위	1956.5.9. 사망일 기재
64	정동기	남	19	농업	정근욱	1950.11.8. 사망일 기재
65	정귀님	여	15		노홍용	1950.12.7. 사망일 기재
66	정기찬	남	1926년생	농업	김흠선	부상 (1990년 사망)
67	정맹모	남	41	농업	정귀례	피살자명부 기재, 1961.7.3. 사망일 기재
68	정차임	여	17	농업	정귀례	사망사실 미기재
69	정열	남	15	농업	정용운	피살자명부 기재, 1952.6.7. 사망일 기재
70	정진기	남	1922년생	농업	정길수	부상 (1987년 사망)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71	정삼근	남	14		정종욱	피살자명부 기재, 1956.5.9. 사망일 기재
72	김도담	여	16	농업	김윤선	1954.9.5. 사망일 기재
73	김윤월	남	12		김윤선	1957.3.2. 사망일 기재
74	김쌍순	여	5		김윤선	1960.1.10. 사망일 기재
75	이상숙	남	1935년생	농업	정순남	부상 (1985년 사망)
76	정병우	남	23	농업	정연순	피살자명부 기재, 1949.10.27. 사망일 기재
77	정민선	남	17	농업	정연순	1949.12.7. 사망일 기재
78	정태섭	남	28	농업	정재형	1972.4.1. 사망일 기재
79	정회섭	남	1932년생	부상	정기옥	부상 (사망)
80	정팔봉	남	24	농업	정팔림	1950.10.12. 사망일 기재
81	정석두	남	41	농업	정남진	피살자명부 기재, 1953.10.20. 사망일 기재
82	정병찬	남	17	농업	정진섭	1948.6.25. 사망일 기재
83	정남선	남	1921년생	농업	정진두	부상(사망), 사망사실 미기재
84	윤성중	남	29	농업	윤을석	1957.3.26. 사망일 기재
85	정계형	남	34	농업	배정자	2차 총격에 사망, 1950.10.5. 사망일 기재

남산포 사건의 희생자는 김갑순(다-1127), 정진덕(다-1128), 최용례·정천수(다-1129), 정종문(다-1130), 심용기(다-1131), 정길문(다-1132), 정동수(다-1133), 정계환(다-1134), 정방섭(다-1135), 정병모(다-1136), 정진철(다-1137), 정동모(다-1138), 정민모(다-1139), 정진발(다-1140), 정창진(다-1141), 정재호(다-1142), 김순애(다-1143), 김재만(다-1144), 정옥모·정기모(다-1145), 정재환(다-1146), 정중진(다-1147), 정문모(다-1148), 정양모(다-1149), 정진봉(다-1150), 정병모(다-1151), 정근모(다-1152·신청인 안춘자), 정동석·정동섭(다-1155), 이사석(다-1156), 정홍섭(다-1157·신청인 정윤철), 정봉수(다-1158), 정진철(다-1160), 이점동(다-1161), 정남섭(다-1162), 정봉섭(다-1163), 정근모(다-1164·신청인 정송모), 윤필중(다-1165), 정상휴(다-1166), 정익모(다-1167), 조병혁(다-1168), 정병선(다-1169), 정진차(다-1170), 정현수

70) 월간조선사, 『6·25사변 피살자 명부』, 2003.

(다-1171), 정현기(다-1172), 이계순(다-1173), 정해로(다-1174), 정영관(다-1175), 김영섭(다-1176), 정봉휴(다-1178), 정재복·정홍섭(다-1179·신청인 정재모), 정재섭(다-1180), 정병섭·김명자(다-1181), 정광열·정말동(다-1182), 정진을(다-1184), 정동휴(다-1185), 정동기(다-1186), 정귀남(다-1187), 정맹모·정차임(다-1315), 정열(다-1316), 정삼근(다-2243), 김도담·김윤월·김쌍순(다-2244), 정병우·정민선(다-2872), 정태섭(다-2974), 정팔봉(다-3900), 정석두(다-4267), 정병찬(다-4435), 윤성중(다-6741), 정계형(다-3752)이다.

또 김유순(다-1154), 정달모(다-1159), 정기찬(다-1314), 정진기(다-1317), 이상숙(다-2245), 정희섭(다-3898), 정남선(다-4696), 정남숙(다-1183)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었으며 정남숙은 생존해 있다.

7) 월야면 외치리 사건

1950년 12월 9일 발생한 월야면 외치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순열의 형 이남열을 포함하여 15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⁷¹⁾

(표 10) 월야면 외치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이남열	남	18	농업	이순열	1950.12.2. 사망일 기재
2	이상근	남	16	농업	이상구	1950.10.27. 사망일 기재
3	정기봉	남	20	농업	정호현	피살자명부 기재, 사망사실 미기재
4	정기업	남	19	농업	정판수	1949.5.11. 사망일 기재
5	정기순	남	16	농업	정판수	1952.10.28. 사망일 기재
6	정기선	남	14		정기정	1950.12.1. 사망일 기재
7	이계주	남	23	농업	이용현	1950.12.28. 사망일 기재
8	정기동	남	31	농업	정용현	피살자명부 기재, 1957.5.5. 사망일 기재
9	정갑현	남	14		정귀현	1969.9.25. 사망일 기재
10	정석봉	남	15	농업	정석현	1950.11.29. 사망일 기재
11	정달선	남	15	농업	정재선	1950.11.15. 사망일 기재

71) 함평군의회 보고서에 희생자로 밝혀진 조금석, 조정석과 유족이 밝혀지지 않은 백기남은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2	정기복	남	17	농업	정병원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20. 사망일 기재
13	정상현	남	17	농업	정동현	1950.11.29. 사망일 기재
14	정만선	남	25	농업	정종성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2. 사망일 기재
15	정기우	남	21	농업	정재준	1950.12.20. 사망일 기재

확인된 희생자는 이남열(다-1209), 이상근(다-1210), 정기봉(다-1211), 정기업·정기순(다-1212), 정기선(다-1213), 이계주(다-1214), 정기동(다-1215), 정갑현(다-1216), 정석봉(다-1217), 정달선(다-1218), 정기복(다-1219), 정상현(다-1220), 정만선(다-1221), 정기우(다-1222)이다.

8) 나산면 이문리 사건

1950년 12월 9일 발생한 나산면 이문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승원의 조부 김기복을 포함하여 9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안명임이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안명임과 아들 김맹수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 11〉 나산면 이문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기복	남	64	농업	김승원	1960.12.10. 사망일 기재
2	김담봉	남	51	농업	김수창	1954.8.5. 사망일 기재
3	박삼봉	여	55	농업	김수창	1954.8.5. 사망일 기재
4	김용길	남	57	농업	김완기	1971.3.25. 사망일 기재
5	이계례	여	50	농업	김완기	1971.3.28. 사망일 기재
6	김양임	여	14		김완기	1973.9.10. 사망일 기재
7	정감산	여	58	농업	김호욱	1952.9.5. 사망일 기재
8	안명임	여	20	농업	김현석	혼인신고 미필
9	김맹수	남	7		김현석	호적 미등재
10	오경선	남	15	농업	오정수	1950.11.15. 사망일 기재

확인된 희생자는 김기복(다-1121), 김담봉·박삼봉(다-1122), 김용길·이계례(다-1123), 김양임(다-1124), 정감산(다-1125), 안명임·김맹수(다-1126), 오경선(다-2870)이다.

9) 해보면 쌍구룡 사건

1950년 12월 31일 해보면 쌍구룡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형술의 부 김영만을 포함하여 23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⁷²⁾

장재수의 숙모(청암댁), 여동생 장이님 장재님 장아기 등 4명, 김중희의 여동생 1명, 박용원의 여동생 박금희는 호적 등재가 안 되어 제적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 김중희의 여동생 김순덕은 사후에 혼인신고를 하여 제적부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표 12) 해보면 쌍구룡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영만	남	59	농업	김형술	1969.4.19. 사망일 기재
2	장진섭	남	48	농업	장재수	1951.12.21. 사망일 기재
3	조운여	여	42	농업	장재수	1952.1.15. 사망일 기재
4	장순섭	남	46	농업	장재수	1951.12.26. 사망일 기재
5	청암댁	여	39	농업	장재수	장순섭의 처로 혼인신고 안 되었음
6	장이님	여	11		장재수	호적 미등재
7	장재님	여	8		장재수	호적 미등재
8	노월산	여	34	농업	김중희	1962.7.5. 사망일 기재
9	김순덕	여	10		김중희	사망신고 안 됨(혼인)
10	김아기	여	3		김중희	호적 미등재
11	이석여	남	72	농업	이금남	제적부 사망미기재
12	최봉예	여	37	농업	이금남	제적부 사망미기재
13	이정행	남	10		이금남	제적부 사망미기재
14	박영수	남	41	농업	박용원	1961.9.20. 사망일 기재
15	구순녀	여	27	농업	박용원	1961.9.20. 사망일 기재

72)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대창리 이장 김성묵은 대창리 원주민 11명과 광암리에서 소개된 피난민 40명이라고 진술하였다.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회속기록(전남반), 9쪽, 1960. 6. 8.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6	박금희	여	1		박용원	호적 미등재
17	박민수	남	28	농업	박용원	1960.4.3. 사망일 기재
18	김연녀	여	24	농업	박용원	1967.8.5. 사망일 기재
19	김만엽	남	52	농업	김재귀	1967.10.5. 사망일 기재
20	김경엽	남	56	농업	김재귀	1950.10.31. 사망일 기재
21	이봉범	남	41	농업	이정이	1955.10.19. 사망일 기재
22	이종락	남	28	농업	이병한	사망사실 미기재
23	장아기	여	1		장재수	호적 미등재

희생자는 김영만(다-1230), 장진섭·조운여·장이님·장재님·청암댁(정순섭의 처)·장순섭(다-1231), 노월산·김순덕·김아기(다-1232), 이석여·최봉예·이정형(다-1233), 박영수·구순녀·박민수·김연녀·박금희(다-1236), 김만엽·김경엽(다-1240), 이봉범(다-1253), 이종락(다-3923), 장아기(다-4689)이다.

10)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사건

1951년 1월 12일 발생한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병용의 가족 5명을 포함하여 50명의 희생과 장종석의 부상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우범·이아기(신청인 이이범)의 희생사실은 이이범 본인에 대한 전화 탐문⁷³⁾과 주변 인물⁷⁴⁾을 통하여 탐문하였으나, 희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희생자 임남도·임명순(신청인 임기운), 장아기(신청인 장종석), 김용순(신청인 윤한봉의 前母)·윤명란(신청인 윤한봉), 노아기(신청인 노병량) 등 6명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정동용은 호적이 멸실되어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장종석은 당시 4살에 총을 맞아 부상하였으나, 현재 생존해 있다. 신청인 모평마을 사건 윤양성은 장애로 인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73) 신청인 이이범, 전화탐문 2007. 4. 11.

74) 신청인 박용원(해보면 유족회장), 2007. 6. 22.

〈표 13〉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윤상수	남	54	농업	윤병용	1968.11.1. 사망일 기재
2	김정임	여	42	농업	윤병용	1968.11.5. 사망일 기재
3	윤병길	남	24	농업	윤병용	1968.11.6. 사망일 기재
4	윤병식	남	21	농업	윤병용	1968.11.1. 사망일 기재
5	윤복덕	남	16	농업	윤병용	1950.10.15. 해보면 상곡리 쌍구룡 사망
6	김유춘	여	83	농업	윤경중	1950.10.29. 사망일 기재
7	주순님	여	42	농업	윤현중	1950.12.5. 사망일 기재
8	윤창중	남	17	농업	윤현중	1950.12.5. 사망일 기재
9	임막동	남	50	농업	임기운	1951.9.18. 사망일 기재
10	윤선순	여	38	농업	임기운	1958.12.12. 사망일 기재
11	임남도	여	6		임기운	호적 미등재
12	임명순	여	3		임기운	호적 미등재
13	이귀범	남	15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4	이오목	여	12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5	이영범	남	9		이이범	1971.11.3. 사망일 기재
16	이갑열	남	49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7	한대례	여	40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8	이인범	남	18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9	이현득	남	16	농업	이이범	1975.2.7. 사망일 기재
20	이윤범	남	9		이이범	1955.3.2. 사망일 기재
21	이문범	남	8		이이범	1971.11.20. 사망일 기재
22	윤옥중	남	49	농업	윤길수	1953.3.22. 사망일 기재
23	장규옥	남	39	농업	장종석	1966.6.8. 사망일 기재
24	윤효임	여	28	농업	장종석	1972.1.4. 사망일 기재
25	장아기	여	2		장종석	호적 미등재
26	임삼봉	여	55	농업	윤일성	1953.9.20. 사망일 기재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27	윤판술	남	35	농업	윤일성	1954.7.10. 사망일 기재
28	정순임	여	16	농업	윤종길	혼인신고 미필
29	윤석열	남	27	농업	김윤임	1951.11.15. 사망일 기재
30	김처녀	여	43	농업	윤한봉	1968.3.1. 사망일 기재
31	김용순	여	22	농업	윤한봉	혼인신고 미필
32	윤명란	여	3		윤한봉	호적 미등재
33	윤양중	남	22	농업	윤철근	1954.7.2. 사망일 기재
34	김기중	남	49	농업	김복수	1974.12.28. 사망일 기재
35	정지족	여	73	농업	김광현	1967.8.25. 사망일 기재
36	윤규삼	남	70	농업	윤오중	1973.6.10. 사망일 기재
37	정고녀	여	54	농업	윤오중	1973.5.6. 사망일 기재
38	노방주	남	35	농업	노병량	1950.11.15. 사망일 기재
39	노병희	여	8		노병량	1961.10.5. 사망일 기재
40	노아기	여	3		노병량	호적 미등재
41	이유용	남	31	농업	이귀성	1969.4.11. 사망일 기재
42	최희락	남	22	농업	최남용	1950.12.20. 사망일 기재
43	장종석	남	1947년생		본인	부상
44	정동용	남	25	농업	윤길수	제적부 확인 안 됨
45	윤덕림	여	12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46	윤석규	남	9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47	윤석문	남	8		윤길수	1950.1.6. 사망일 기재
48	윤유성	남	61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49	장양림	여	63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50	이평림	여	61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51	모순녀	여	27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희생자는 윤상수·김정임·윤병길·윤병식·윤복덕(다-1208), 김유춘(다-1234), 주순남·윤창중(다-1235), 임막동·윤선순·임남도·임명순(다-1237), 이귀범·이오목·이영범·이갑열·한대례·이인범·이현득·이윤범·이문범(다-1238), 윤옥중(다-1241), 장규옥·윤효임·장아기(다-1242), 임삼봉·윤관술(다-1243), 정순임(다-1246), 윤석열(다-1247), 김치녀·김용순·윤명란(다-1248), 윤양중(다-1249), 김기중(다-1250), 정지족(다-1251), 윤규삼·정고녀(다-1252), 노방주·노병희·노아기(다-1254), 이유용(다-2871), 최희락(다-3922), 정동용(다-10830), 윤덕림·윤석규·윤석문·윤유성·장양림·이평림·모순녀(다-10831)이다. 또 장종석(다-4944)은 당시 3살이었는데 발목에 총을 맞았다.

11) 나산면 우치리 사건

1951년 1월 14일 발생한 나산면 우치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희생자 수는 이계준의 모 김증산을 포함하여 6명으로 확인되었다.⁷⁵⁾ 이계백의 외숙 안귀식은 멸손되어 제적부에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동생 이야기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 14〉 나산면 우치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증산	여	58	농업	이계준	피살자명부기재, 1970.10.5. 사망일 기재
2	안귀식	남	28	농업	이계백	사망사실 미 등재
3	안귀순	여	33	농업	이계백	1992.5.13. 사망일 기재
4	이야기	남	1		이계백	호적 미등재
5	김신광	여	61	농업	김재경	1924.10.18. 사망일 기재
6	정병옥	남	11		정병호	1962.11.20. 사망일 기재
7	문앵례	여	68		고영석	사망사실 미기재

희생자는 김증산(다-1054), 안귀식(다-1114), 안귀순 이야기(다-1115), 김신광(다-1118), 정병옥(다-1119), 문앵례(다-1120)이다.

75) 희생자 김증산은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좌익 및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다.



12) 기타 소규모 희생사건

그밖에 1950년 11월 27일부터 1951년 1월 14일경까지 5중대의 작전지역이었던 함평 일원과 장성군 삼서면, 광산군 인근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규모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병화의 부 정성면을 포함하여 29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생자의 신원과 당시 사건발생지역은 아래와 같다.

〈표 15〉 기타 소규모 희생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장소
1	정성면	남	31	농업	정병화	월야 영월, 1950.1.9. 사망일 기재
2	이동선	남	29	농업	이만희	해보 금덕, 1965.3.10. 사망일 기재
3	이동기	남	25	농업	이만희	해보 금덕, 1965.3.10. 사망일 기재
4	안해동	남	44	농업	안길원	해보 금덕, 1951.7.28. 사망일 기재
5	김기만	남	46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53.10.29. 사망일 기재
6	정약순	여	49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52.3.12. 사망일 기재
7	강정순	여	20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53.9.15. 사망일 기재
8	김인순	여	13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47.7.20. 사망일 기재
9	정창기	남	27	농업	정윤현	월야 전하, 1950.11.15. 사망일 기재
10	이성신	여	19	농업	이기신	해보 금덕, 1961.3.15. 사망일 기재
11	이용범	남	45	농업	이재문	해보 금덕, 1961.3.7. 사망일 기재
12	윤효순	여	43	농업	이재문	해보 금덕, 1961.6.20. 사망일 기재
13	김영만	남	17	농업	김영휴	1961.6.7. 사망일 기재
14	노봉래	남	55	농업	노병철	1951.11.30. 사망일 기재
15	노연자	여	18	농업	노병철	호적 미등재
16	최남휴	남	34	농업	최병수	해보 고모, 1950.10.28. 사망일 기재
17	이윤선	남	64	농업	이덕행	해보 금덕, 1957.5.26. 사망일 기재
18	이손동	남	39	농업	이덕행	1958.1.29. 사망일 기재
19	이달성	남	27	농업	이국범	사망 미기재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장소
20	윤일두	남	45	경찰	윤석주	해보 금덕, 1950.11.16. 사망일 기재
21	박명수	남	25	농업	장동규	월야 계림, 1958.12.16. 사망일 기재
22	배판수	남	29	농업	배상호	해보 귀밀, 1951.11.30. 사망일 기재
23	이기범	남	35	농업	이재삼	월야 서촌, 1966.10.26. 사망일 기재
24	양대자	남	43	농업	양윤식	월야 용정, 1964.12.14. 사망일 기재
25	윤봉연	남	49	농업	윤무병	해보 쌍구룡, 1975.11.15. 사망일 기재
26	서이섭	남	27	농업	서동기	해보 탐재, 1951.10.15. 사망일 기재
27	김병갑	남	40	농업	김현필	해보 금덕, 1953.2.16. 사망일 기재
28	봉진성	남	28	농업	봉석	해보 문장, 1950.11.20. 사망일 기재
29	이병옥	남	27	농업	이옥희	광산 삼도, 사망일자 미기재

신청인 이만희의 숙부 이정열, 이정기의 사망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김영만은 신청인 김영휴의 형으로서 행정 착오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 희생자는 김영휴이다.

희생자 중 노연자는 호적 등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달성은 제적부 상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희생자⁷⁶⁾는 정성면(다-1229), 이동선·이동기(다-555), 안해동(다-556), 김기만·정약순·강정순·김인순(다-1049), 정창기(다-1177), 이성신(다-1319), 이용범·윤희순(다-2744), 김영만(다-2862), 노봉래·노연자(다-2868), 최남휴(다-3223), 이운선·이손동(다-3626), 이달성(다-3899), 윤일두(다-3919), 박명수(다-4104), 배판수(다-4557), 이기범(다-4558), 양대자(다-5612), 윤봉연(다-6302), 서이섭(다-6306), 김병갑(다-8485), 봉진성(다-10810), 이병옥(다-1173)이다.

신청인 김성수(다-5617)는 진실규명신청서에 누이 김소림이 1950년 가을 국군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목격자 양윤식의 증언에 따라 5중대의 해보 주둔

76) 소규모사건 희생자의 사망일자는 다음과 같다.

정성면(1950. 11. 27.), 이동선·이동기(1950. 12. 말), 안해동(1951. 1. 6.), 김기만·정약순·강정순·김인순(1951. 1. 9.)·정창기(1950. 11. 28.), 이성신(1950. 12. 13.), 이용범·윤희순(1950. 12. 8.)·김영만(1950. 12. 7.), 노봉래·노연자(1951. 1. 6.), 최남휴(1950. 12. 8.), 이운선(1950. 12. 4.), 이손동(1950. 12. 2.), 이달성(1950. 11. 26.), 윤일두(1950. 12. 25.), 박명수(1950. 12. 10.), 배판수(1950. 12. 1.), 이기범(1950. 12. 5.), 양대자(1950. 12. 5.), 윤봉연(1950. 12. 21.), 서이섭(음·1950. 11. 13.), 김병갑(1950. 12. 27.), 봉진성(1950. 12. 5.), 이병옥(1950. 12. 7.)



전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하여 함평11사단 사건의 희생자에서 제외하였고, 광주·전남지역 군·경토벌작전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이관하였다.

신청인 정진두(다-4696)의 고종사촌 형 정재덕은 제적부 상에 「단기 4283년 9월 2일 ○○지구에서 전사 육군본부 부관감 … 단기 4294년 11월 20일 보고」로 되어 있어 함평 11사단 사건 희생자에서 제외하였다.

192명의 진실규명신청인 중 185명의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현장 사망자 249명과 부상 후 사망 또는 생존자 9명을 확인하였으며, 이외에 미신청인 1명을 사건현장 부상 생존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신청인 윤석주(다-3919호) 진실규명 신청에서 피해자 진막동, 윤일태는 인민군 통치 시기 인민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본 사건 진실규명대상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하여 해당 조사국에 이관하였다.

나. 사건지역 전체 희생자 수

함평 11사단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별 피해자를 확인하고 전체 피해규모를 산출하였다. 본 사건의 전체 피해자는 9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258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피해자 확정은 주로 신청인,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나 신청인 박희님과 같이 사망하여 조사,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희생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⁷⁷⁾ 그래서 함평 11사단 작전지역이었던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사건관련 사망자는 최소 249명으로 확정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사건지역별 희생자 수와 함평군의회가 조사한 희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6〉 진실화해위원회와 함평군의회 조사의 마을별 사건희생자 규모

(단위: 명)

구분	덕림리	장교	동촌	수해리	남산외	외치리	이문리	쌍구룡	모평	우치리	기타	합계
진실화해위	6	9	13	10	77	15	10	23	50	7	29	249(9)
함평군의회	7	11	18	5	90	18	8	34	48	10	13	262

※ 주 : () 안의 숫자는 부상자 임.

77) 신청인 박희님은 사망하였고, 신청인 채상현, 윤금복, 정태중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윤양성은 장애로, 정병주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정이재는 연결이 안 되었다.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97년 함평군의회 「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 그리고 유족회가 작성한 「유족회원 명부」 등을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피해규모와 비교해보면 1960년 제4대 국회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엇비슷하다.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남반(유옥우, 임차주 조사위원과 오포 전문위원)은 함평 현지에 내려와 사건 당시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단은 실태조사 결과 월야면 피해자 수를 남산면 현장 사망 108명을 포함하여 350명(부상 25명 포함)이라고 집계하였고, 해보면 128명, 나산면 46명을 포함하여 함평1사단 집단희생 피해자 수는 도합 524명으로 집계하였다.⁷⁸⁾ 이러한 피해자 수는 당시의 국회 속기록과도 차이가 난다.

함평 현지 증언청취 속기록을 보면 당시 월야면 부면장은 월야지역 희생자를 350명(부상자 25명 포함)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해보면은 금덕리 고두마을 43명(이장 강철현 증언), 모평마을 83명(이장 윤형중 증언), 성대마을 40명(이장 김성묵 증언), 그리고 해보지역 주민 45명(김성묵 증언)이라고 증언하여 이를 합치면, 해보면 피해자는 211명이었다. 나산면은 우치리 36~37명(이오섭 면장 증언), 이문리 10명(이오섭 면장 증언)이라고 증언하였다. 속기록에 나타난 피해자 수를 합치면 607명이 된다. 이는 해보면 피해자 수에서 83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제4대 국회의 현지 증언청취를 통한 조사가 1960년 6월 8일 단 하루 동안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장들의 증언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524명의 신원 등이 포함된 명단은 현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함평군의회는 1996년 12월 28일 제46회 정기회에서 함평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표, 간사 이재화 의원)를 구성하여, 1997년 12월 29일까지 1년간 활동하였다.⁷⁹⁾ 군 의회 조사 역시 피해 유족들을 개인별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마을 이장을 통해 기존 유족회 명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한계가 많았다.

함평군의회 조사는 당시 마을별 증언청취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조사이어서, 그 보고서의 희생규모 역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조사에서 5중대에 의하여 발

78) 제4대 국회 조사보고서는 당시 조사가 단 하루에 이루어진 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희생자의 규모를 사건 당시와 가장 근접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조사의 원자료 등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또 조사보고서에서는 함평지역 희생자를 면별 희생자 수만을 발표하다 보니, 마을별 희생자 수 등 희생자의 구체적인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79) 현지 기초단체가 실시한 조사였지만 당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등 군의 지휘계통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한 사건 중 동네의 다른 소규모 사건과 관련 희생자 규모는 누락되었다.

이에 비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는 진실규명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피해규모 산정에서 이전 조사에 비해 좀 더 엄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이 상당수 있고 가족이 전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58명이 최종 확인된 피해자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함평11사단사건 관련 희생자는 최소 249명에서 최대 607명이라고 일단 결론내릴 수 있다.

또 『6·25피살자 명부』에 기록된 30여 명이 오히려 국군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다. 연령별·성별 희생자 구성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17〉 희생자의 연령별, 성별 구성⁸⁰⁾

(단위: 명)

구분	~10	~20	~30	~40	~50	~60	61세~	기타	총계
전체(여자)	22(12)	71(18)	55(7)	40(9)	34(7)	16(5)	11(5)	9(1)	258
비율(%)	8.8	28.5	22.1	16.1	13.7	6.4	4.4	(부상)	100

※ 주: 기타는 9명의 부상자 포함.

희생자의 연령·성별 분포를 보면 41.7%에 이르는 104명이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이었다. 희생자 중 여성은 64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50세 이상 희생자는 특히 쌍구룡과 모평, 우치리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20대 희생자는 총살직전 청장년을 선별하였던 남산피와 외치리 사건에서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전체 희생자의 41.7%에 이르는 104명 이상이 사회활동을 할 연령대가 아닌 노인과 청소년이고, 특히 여성도 전체의 25.7%(64명)나 차지하여 희생자의 대다수가 노인, 청소년, 여성 등 빨치산 협력활동과는 무관한 민간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일부 사건지역에서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시키는 형식적인 선별절차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을 앞이나 일정 지역에 주민을 불러낸 후 무차별적으로 총격이 가해진 사건의 경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80)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신청인의 조사와 제적부 확인 및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조사 거부 등으로 사건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분포도에서 제외하였다.

희생자들은 5중대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 내통자 또는 협력자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되었지만 신청인과 참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249명의 사망자 가운데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빨치산에게 협력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생자들은 빨치산과 국군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이었다.

3. 가해주체와 가해 이유

가. 조사내용

1) 국군 11사단의 창설과 토벌작전

가) 부대 창설과 견벽청야 작전

한국전쟁 발발 초기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인민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였다.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인민군과 지방좌익 등은 북으로의 퇴로가 차단되자 후방 산악지대에 들어가 빨치산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1950년 8월 27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54호에 의거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11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육군 준장 최덕신이 9월 25일자로 초대 사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11사단은 지리산 동서 양안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다 1951년 4월, 8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11사단장 최덕신은 중국의 고전적 작전개념인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을 빨치산 토벌 작전에 활용하였다. 이 작전은 ‘지켜야 할 전략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고하게 확보하고, 부득이 적에게 내놓게 되는 지역은 인력과 물자를 이동시키고, 건물은 깨끗이 없애 적으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11사단은 빨치산 토벌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목표를 구분하였다.⁸¹⁾

- 제1기(1950.10.7.~10.25.) 작전은 병력의 호남지역에 집결 후 훈련과 각 지역 행정기관 복구 및 적정을 수집하였다.
- 제2기(1950.10.26.~12.31.) 작전은 월동기를 맞아, 빨치산의 저항을 불능케 하기 위하

8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8, 172~176쪽.



여 보급로 차단 및 통신망 두절 등의 방법을 통해 적의 저항을 불능케 하기 위하여 ‘견벽청야 작전’을 전개하였다.

- 제3기(1951.1.1.~1.31.)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빨치산이 고봉을 근거지로 아지트를 구축하고 약탈, 납치, 방화, 기습 등을 감행함에 경찰, 청년방위대에 보급로 및 통신망 확보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사단은 근거지 붕괴에 주력하였다.
- 제4기(1951.2.1.~3.31.) 작전은 최종 토벌기로서 공비의 섬멸을 위하여 지리산 불갑산 등 빨치산 근거지 인근 산악지역의 주민 소개 작전도 병행하였다.

이 작전은 빨치산토벌이라는 본래의 작전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발생시켰다. 경상남도 거창, 함양, 산청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작전에 대해 당시 사단장이었던 최덕신은 “견벽청야작전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컸어요. 집을 불사르고 철수시킨 다음, 다시 주민들이 들어갈 때 정부에서 보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 원성이 클 수 밖에요”라고 하면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그 폐해를 인정한 바 있다.⁸²⁾

나) 11사단 예하 연대의 창설과 20연대의 광주 주둔

11사단은 예하에 9, 13, 20연대를 배속시켰는데, 함평11사단사건과 관련된 20연대는 1950년 9월 25일 경상남도 삼랑진에서 육군 제6훈련소를 개편하여 창설하였으며, 10월 1일 제주의 육군 제5훈련소로부터 장교 87명, 사병 1,500명을 충원 받아 편성을 완료하였다.⁸³⁾ 20연대는 11사단 작전명령 제3호에 의거, 1950년 10월 4일 삼랑진을 출발하여 10일 광주시에 도착하여 광주여자중학교에 연대본부를 설치하였다.⁸⁴⁾

20연대 1대대는 1950년 10월 18일 담양읍 지역과 전라북도 순창 방면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고, 3대대는 광주, 목포에 이어 육로를 이용, 함평지역을 수복하고 화순지역에 주둔하게 된다.

한편 9연대는 대구에서 창설되었으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는데 1951년 2월 초 경상남도 거창, 산청, 함양의 산악지역의 주민을 집단 총살한 사건 즉 ‘거

82)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3, 을유문화사, 1975, 410쪽.

8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22쪽.

84) 1950. 10. 22. 연대 작명 제12호에 의거 광주여자중학교에 주둔 중인 연대본부와 예하 각 대대본부를 광주 서석국민학교로 이동하였다. 육군 군사연구실, 「부대약력표」.

창사건'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13연대는 진해시 진해여자중학교에서 11사단에 예속되었고, 10월 9일 전주로 이동하여 10월 23일 연대의 전방지휘소를 전주에 두고, 전라북도 내 공비 토벌작전을 벌였다.⁸⁵⁾

1950년 10월 7일부터 1951년 3월 10일까지의 11사단 20연대의 전과 및 피해통계를 보면 사살이 6,800명, 포로는 527명으로 전과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사단의 공식 공비토벌작전과의 상당 부분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많이 한 함평, 화순, 담양, 고창, 순창 등지가 전쟁 당시 20연대 2대대 및 3대대의 작전지역이었다는 점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 2대대의 편성과 초기작전

20연대는 1950년 9월 25일 육군본부 일반명령에 의거 제6훈련소로부터 20연대로 개편된 이래 같은 해 9월 28일 연대 작명 제1호에 의거하여 제2대대(대대장 유갑열 소령)를 경상남도 진영에서 편성⁸⁶⁾하였다.

그후 제2대대 작전보고에 의하면 최초 작전은 10월 18일 연대 작명 제10호⁸⁷⁾에 의거, 전라남도 장성지구 소탕전을 전개하였다.⁸⁸⁾

이후 제2대대의 작전 관련기록은 육군본부 작전명령⁸⁹⁾에 의하여 미 9군단에 이양되었고, 실행내용은 육군본부에서 번역한 미군 문서인 「정기작전보고」에 수록되어 있다.

85) 보병제11사단, 『화랑약사』, 1976; 보병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참조.

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26쪽.

87) 광주 주둔 중인 제2대대장 육군소령 유갑열 이하 완전 1개 대대는 장성방면으로 출동하라.

88) 「장성읍 동남방 261고지 소탕전」,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37쪽.

89) 보병11사단, 『화랑약사』, 1976, 78쪽.



- 부록 제1호 -

육 군 본 부

육본작명 제 207 호

1. 가. 생략

나. 미 제8군 및 아군은 38선을 돌파하여 괴뢰군을 완전 격멸키 위하여 집결 중에 있음.

2.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려 함.

3. 가. 제11사단장은 1950. 10. 5.까지 사단사령부 및 제13연대를 남원, 제20연대를 광주, 제9연대를 전주에 각각 집결시켜 미 제9군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나. 집결 후 즉시 사단 전투지경선 남방의 전남지역을 인수 담당하라.

4.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작전명령 제207호를 통하여 11사단에 대한 지휘권을 미9군단에 이양하도록 하였고, 미군 지시에 의하여 20연대 2대대가 장성군 사창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이 문서에 나타나 있다.

11ROK Div: 13R 一部兵力은 270400時 CQ8731附近에서 約200의 敵과 接戰하였음. 敵KIA 30, 殘敵은 分散. 20R2Bn은 오지리 B8893으로 移動 中. 20R3Bn은 동림리 BP8086으로 進出하였으며 期間 中 接戰報告 無. 全 部隊는 擔當地區에서 積極的으로 任務遂行 中.⁹⁰⁾

위 보고에서 좌표 CQ8731은 해남군 옥천면 지역이고 좌표 B8893(BP8893의 오기)은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인근이다. 지명 오지리와 동림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BP8086은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부근이다.

이 지역에서 군의 이동사실은 신청인 양윤식의 진술⁹¹⁾에서 확인되었다. 진실화해위원

90)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1950. 10. 336쪽.

91) 신청인 양윤식, 전화담문, 2007. 5. 15.

회의 조사결과 11월 중순 함평군과 광산군의 경계지점인 월야면 외치리 인근에서 군의 이동과 초소가 운용되었음이 증언을 통하여 확인되었다.⁹²⁾ 기록상 사건지역에서 20년대 2대대가 최초로 출현한 것은 12월 18일 함평군 해보면 구계리로 알려져 있었지만,⁹³⁾ 위 『정기작전보고』에서는 10월 27일에 함평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대대는 이후 11월 30일에 화순군 동면 287고지 소탕전을 전개하였다.⁹⁴⁾ 진실화해위원회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 2대대의 대대본부와 8중대는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6중대는 전라북도 고창에, 7중대는 장성군 북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⁹⁵⁾

라) 국군의 함평읍 수복과 5중대의 해보면 주둔

참고인 이현석(현 함평문화원장)의 진술⁹⁶⁾에 따르면 함평군 함평읍에 20연대가 최초로 나타난 시점은 1950년 10월 23일이다.⁹⁷⁾ 3대대 9중대가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던 중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인근에서 빨치산과 전투를 한 후 함평중학교에 주둔하였고, 일부는 나산면 나산초등학교에 주둔하였다. 나산면 구산리 주민 이재열(당시 청년방위대원)은 함평 쪽에서 들어온 군인이 나산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인근 원선리에서 빨치산과 전투를 벌였다⁹⁸⁾고 증언하였다.

12월 18일 「구계리 공비소탕전」은 현지 주민을 통해 탐문해 본 결과 실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⁹⁹⁾

또 5중대의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 주둔에 대해서는 당시 5중대장 연락병 김일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으며,¹⁰⁰⁾ 윤인식(4선 국회의원), 이계필(사건 당시 월야지서장), 오정인(월야지서 경찰)의 진술도 그와 일치한다.

2) 가해주체

함평11사단사건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인근 지역에서 사건에 대해 들어서

92) 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서 4쪽, 2006. 5. 17.
 9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28쪽.
 94) 「화순군 동면 287고지 소탕전」,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41쪽.
 95) 2대대의 작전 관련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고창지역 조사, 그리고 본 사건과의 함평지역 조사 등에서 주둔사실은 확인되었다.
 96) 참고인 이현석, 진술조서 4쪽, 2006. 8. 23.
 97) 함평의 수복은 1950년 10월 23일이다.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②, 1999년, 67쪽.
 98)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이재열(5중대 청년방위대원)과 2007. 6. 6. 전화탐문.
 99) 해보면 금덕리 거주 윤주원(061-323-0414)과 2007. 5. 9. 전화탐문.
 100)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14, 2000. 6. 25, 『MBC』; 참고인 김일호, 2007. 2. 15.



알고 있는 모든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가해주체로 당시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를 지목하고 있다. 당시 중대장 권준옥의 연락병 김일호는 2000년 6월 25일 『MBC』가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에서 5중대(중대장 권준옥)를 가해주체로 지목하였다.¹⁰¹⁾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도 김일호는 당시 가해주체가 5중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¹⁰²⁾

5중대 및 중대장 권준옥이 사건의 명령 지휘책임자라는 것은 당시 월야지서 경찰관이었던 오정인의 진술,¹⁰³⁾ 월야지서장 이계필의 증언서, 동3(월야, 해보, 나산)면 선무공작대장 윤인식의 증언서에서도 확인되었다.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서도 가해부대를 ‘5사단 20연대 5중대’(중대장 권준혁)라고 지목하였다.¹⁰⁴⁾ 또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기사에서도 5중대장을 권준옥 대위로 보도하였다.¹⁰⁵⁾

그러나 권준옥의 인사기록카드나 자력표 등에는 5중대장 근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 사건 발생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1951년 1월 22일 ‘2대대 장교 권준옥’을 ‘연대 근무중대 병기장교 권준옥’으로 전보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 기록은 1951년 1월 14일 나산면 우치리 사건과 1월 20일 나주 동창교 민간인희생사건 발생 후 권준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¹⁰⁶⁾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신청인 진술에서 확인 되는 바 같은 2대대 소속이면서도 전·남북의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했던 6중대나 8중대에 의한 피해보다 5중대에 의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사건의 지휘책임이 일단 5중대장에게 있음을 입증해 준다.

당시 목격자나 경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중대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괴롭히는 일은

101) 김일호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병, 대대장 유갑열, 중대장 권준옥, 김일호는 5중대 권준옥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소대장한테 전달하기를 저 부락에서 도망해 나올 때 노약자, 걸린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나이 많은 노약자는 빼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범위다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라.”

102) 참고인 김일호, 녹취록 6·7·12·34·36쪽, 2007. 2. 15.

103) 오정인은 “(당시 중대장은) 권준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번은 회의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한번은 책임제를 맡겨주었는데, 만약 공비로 지목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3쪽, 2006. 12. 13.)

104)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15쪽. 당시 희생자 측 증인은 ‘권준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듣는 과정에서 권준옥을 권준혁으로 들어서 초래된 착오로 보인다.

105) 「마구 터지는 大虐殺 秘史」, 『한국일보』, 1960. 5. 20.

106)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139쪽.

비밀비재했는데, “군인들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니까 군인들이 없는 곳으로 피신가야 했다”¹⁰⁷⁾고 증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국군들이 없는 곳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으며, 따라서 불갑산으로 올라간 주민들 상당수도 빨치산을 따라간 좌익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5중대 군인을 피해 피난 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인 윤홍병은 “전반적으로 질이 나빴다. 무시무시한 놈들이다”라고 5중대 군인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학련활동을 했던 정현모는 “이동 시에 낙오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면 죽여 버리기까지 하였다”¹⁰⁸⁾며 5중대 군인들의 잔인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5중대 사병의 대부분은 전투력이 별로 없는 신참 군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대 후 일주일의 훈련으로 낯선 함평에 온 17~18세의 병사들에게 문장장터에 주둔한 후 맞닥뜨린 빨치산의 기습은 위협적이었다. 더구나 5중대는 소대별로 야전에 참호를 파고 천막을 치고 생활하다 보니, 틈만 나면 민가에 나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증언도 있다.

5중대의 규율은 6중대와 대비된다. 6중대는 같은 대대의 중대였지만 학교 안(고창중학교)에 주둔하다 보니 병력이 통제되고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되었지만,¹⁰⁹⁾ 5중대는 소대별 천막생활을 하여 통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중대가 작전지역에서 민간인 집단총살사건을 빈번하게 야기한데는 5중대장 권준옥의 개인적인 성격과 품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대장 권준옥과 일부 병사의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은 주민의 원성을 샀다. 남산뫼 사건에서 젊은 여자를 연행하려 하자 연행을 막으려는 그 아버지까지 총살하였고, 당일 남산뫼 현장에 가면서 월야면 용두리에서 결혼을 앞둔 처녀를 성폭행 후 총살하기도 하였다.¹¹⁰⁾

참고인 이낙범에 의하면 권준옥 중대장의 만행에 대해 해보지서장이 연대장 박기병 대령에게 진정하여 연대장이 해보 중대본부를 불시에 방문하였는데, 그는 중대막사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다 발각되어 입창조치를 받기도 하였다.¹¹¹⁾ 5중대 화기소대원에 의한 여성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였다.¹¹²⁾ 또 해보면 문장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어느 주민은 5중대의 요구에 의하여 특

107) 참고인 장두병, 진술조서 4쪽, 2006. 6. 28.

108) 참고인 정현모, 진술조서 9쪽, 2006. 7. 20.

109) 참고인 윤석근, 녹취록 6쪽, 2006. 12. 13.

110)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8쪽, 2006. 6. 29.

111) 참고인 이낙범, 진술조서 5쪽, 2006. 12. 13.

112) 신청인 김홍빈·노병철의 진술조서, 2007. 1. 18.



정 주민이 매일 여성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¹¹³⁾

권준옥 5중대장과 중대원의 이러한 행태는 지역주민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¹¹⁴⁾ 한편으로는 집단희생 사건 발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된다.¹¹⁵⁾

한편 사건지역의 경찰, 청년방위대원, 학도연맹원, 구국연맹원 등도 군의 작전에 동원되었다. 청년방위대원의 경우 남산피 사건, 쌍구룡 사건 발생 시에는 마을에 들어가 5중대의 명령으로 주민을 끌어냈으며 군인들이 주민을 총살할 때는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을입구에서 망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다.¹¹⁶⁾

또 학도연맹원의 일부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비색출을 명분으로 마을에서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¹¹⁷⁾ 구국연맹원 또한 군인들이 요구하는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등 비록 소극적이지만 가해 행동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5중대원 중 명령을 피해 주민을 살려준 경우도 있는데, 남산피 사건 당시 5중대장 연락병 김일호가 정일웅을 살려주기도 하였고, 어느 군인은 주민들을 나오라고 독려하는 이장에게 만류하였는가 하면, 쌍구룡에서는 앞장서 나오는 주민에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일러주기도 하였다. 또 나산면 우치리에서는 군인이 제사를 지내는 집에 와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단총살을 피할 수 있었다.¹¹⁸⁾ 이는 중대장의 총살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병들이 중대장의 명령에 대한 거부행위로 볼 수 있다.

3) 가해 이유

사건이 일어난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은 빨치산 근거지였던 불갑산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9·28 수복이후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과 일부 지방좌익이 불갑산과 태청산으로 입산하여 인근지역에서 물자를 조달하며 5중대 및 경찰과 교전을 벌였다. 당시 5중대는 불갑산과 태청산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하여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에 주둔하던 초기부터 월야면 외치재의 교통요지에서 경계초소를 운용하고 있었다.

113) 정찬동 『함평양민학살』, 시와 사람, 1999, 75~84쪽.

114) 신청인 양윤식, 진술조서 4쪽, 2007. 3. 15.

115) 참고인 박병인, 진술조서 38·42쪽, 2007. 2. 14.

116)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4쪽, 2006. 6. 29.

117) 참고인 윤홍병, 진술조서 7쪽, 2006. 6. 8.

118) 신청인 김재경, 진술조서 5쪽, 2006. 8. 9.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는 당시 형식적으로 수복은 되었으나, 전시 계엄이 유지되고 있었다. 3명이상 회합을 할 경우 반드시 군·경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던 당시 계엄 지침을 알지 못했던 덕림리 주민들은 노루고기를 먹기 위해 주막을 드나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연행된 후 총살당하였다.

장교와 동촌마을의 집단 총살사건은 한새들 전투 전후로 빨치산 협력자들이 뒷산에 올라 징과 팽과리를 치고 만세를 부르면서, 5중대원을 크게 자극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12월 9일의 외치리 사건은 5중대가 마을 앞의 광주-영광 간 도로가 파헤쳐진 것을 주민이 빨치산과 내통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의심하여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¹¹⁹⁾

나산면 이문리의 경우 마을 거주자 가운데 좌익활동을 한 주민이 있다며, 명부를 보고 선별하여 살상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쌍구룡에 끌려나왔던 성대마을 주민들은 식량 등을 가지러 원래 거주지였던 광암리를 자주 왕래하였다고 하는데, 5중대는 이를 빨치산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을 시켜 틈틈이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사건 전날인 12월 30일 5중대는 어수산 방향으로 토벌작전을 나갔다가 잠복하고 있던 빨치산의 습격으로 퇴각하기도 하였다.¹²⁰⁾ 5중대는 이날의 습격에 자극받아 성대마을의 소개민을 빨치산으로 의심하여 집단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상곡리 모평마을 집단희생사건의 원인은 사건 전날(1월 11일) 밤 모평마을 뒷산과 연계되어 있는 비너봉에서 빨치산들이 중대본부에 총격을 가한데 대한 보복행위였다.

나산면 우치리 소재마을의 경우 일부 소개 피난민들이 이 곳에 식량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드나들었는데, 5중대는 이를 빨치산 활동으로 의심하여 마을에 들어가 남아있는 주민을 총살하였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1950년 12월 2일의 한새들 전투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함평 11사단 사건은 월야, 해보 등지의 불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과 내통한다고 간주한 5중대 군인들이 무리하게 토벌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군인들은 빨치산에게 피해를 입은 다음에는 한새들 전투 이후 장교·동촌마을 사건이나 남산외 사건, 쌍구룡, 모평마을 사건처럼 화풀이 식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중대장의 평소 부하나 주민들에 대한 난폭한 행동도 주요

119) 신청인 이용현, 진술조서 8쪽, 2006.6.28; 정호현(3쪽), 정재선(6쪽), 정병원(4쪽), 정동현(3쪽).

120)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11쪽, 2006. 6. 29.



한 이유가 되지만, 빨치산과 비교해서 전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이 어린 군인들의 빨치산에 대한 공포감과 보복심도 화풀이식 무차별적인 주민희생을 야기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나. 소결

1950년 10월 말 이후 함평군 해보면, 월야면에 주둔하면서 토벌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집단 총살한 가해부대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5중대의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문장 장터 주둔 사실은 당시 5중대장 연락병의 진술,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윤인식, 이계필, 그리고 생존해 있는 오정인 등의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또 가해부대의 직접 책임자인 5중대장은 권준옥 대위로 확인되었다.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지역의 집단희생사건은 국군11사단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5중대는 한새들 전투에서와 같이 사건 발생지역인 불갑산 인근지대 주민들이 빨치산에 내통 또는 협력하고 있다는 의심아래 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어떠한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총살하였음이 분명하다.

4. 가해 측의 지휘·명령체계와 적법성 여부

가. 조사내용

1) 가해측의 지휘·명령체계

1960년 국회 조사당시 현장 생존자 정일웅은 “그 사람(5중대장)이 와가지고 말한 것은 하루에 공비 몇 명과 무기 얼마를 사살하고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¹²¹⁾ 이는 5중대의 민간인 사살이 상부의 ‘공비사살’ 지시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즉 본 사건의 가해부대인 5중대 중대장 권준옥이 함평지역 민간인 집단총살 사건을 직접 명령한 장본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루에 일정한 수의 공비를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은 상급부대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월야지서 토벌대장으로서 사건 직전 군경작전 회의 현장에 참석했던 오정인, 5중대장 연락병으로서 명령 내용을 알고 있었던 김일호, 당시 군의 작전과 상부 보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청방 경력의 김석주의 다음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1) 정일웅 증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16쪽, 1960. 6. 9.

사건 전에 작전회의에는 3번 정도 참석하였으며, 한번은 월야와 삼서면 경계지역에 작전회의에 참석했는데,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중대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은 무조건 50명씩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였습니다.¹²²⁾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병, 대대장 유갑열, 중대장 권준옥, 김일호는 5중대 권준옥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무슨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소대장한테 전달하기를 저 부락에서 도망해 나올 때 나이 많은 노약자, 말하자면 나이 많은 노약자는 빼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범위다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라.¹²³⁾

5중대 군인들이 이발소에 와서 자신들이 주민들의 집에서 금반지, 분첩 등을 가져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으며, 이중 분첩은 이발소에 주고 가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5중대 군인들 간에 어깨에 힘을 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상부로부터 하루에 공비 50명씩을 죽이라는 지시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¹²⁴⁾

위의 진술 및 증언에서는 5중대장 권준옥이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 ‘대대장의 명령’ ‘상부로부터… 지시’에 의해 하루 50명 혹은 일정규모의 공산주의자 혹은 공비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물론 5중대 분대장 황학준을 비롯한 다른 사병들은 그러한 명령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¹²⁵⁾ 하지만, 일반 사병들이 이러한 명령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본다면, 군경 합동의 작전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오정인, 대대, 연대로부터 명령을 수발하고 작전보고를 했던 연락병 김일호의 증언은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20년대 작전명령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 혹은 연대의 실제 명령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부로부터의 명령 전달과정을 목격한 위의 오정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의 내용이 실제 명령서에 적혀 있었다면 연대장, 대대장은 이들을 곧 공비와 동일 시 했다는 말이 된다.

5중대장은 작전 회의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하면서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려면, 그런 놈들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 이 작전회의에 참석한 이후에는 그 말을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라고 해석했는데,¹²⁶⁾ 5중대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 지휘관들도 동일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5중대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 혹은 적어도 묵인 하에 불갑산 인근 동네의 청장

122)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5쪽, 2006 12, 13.

123) 김일호 증언,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14, 2000.6.25, 『MBC』

124) 참고인 윤주원, 진술서, 2007. 5, 17.

125) 참고인 황학준, 진술조서 9쪽, 2006. 7. 6.

126)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5쪽, 2006 12, 13.



년기의 주민들을 모두 빨치산 협력자, 부역자로 간주하고 총살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발생하였던 동네 중 권준옥이 현장에서 지휘했던 몇 곳에서 총살직전 주민을 선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상급 지휘부에서 불갑산 인근 지역의 민간인을 사실상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해도 무방하다는 명령, 지침을 내렸을 것이다.

11사단 9연대에 의해 저질러진 경상남도 거창 신원면, 산청, 함양 등지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예는 이 사건의 지휘·명령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9연대장 오익경은 예하부대 부대장에게 하달한 작명부록에서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고 명령하여 비전투원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으며, 재판석상에서도 “이 적행위자를 발견 시는 즉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이라고 시인하였으며, 이적행위자란 “적에 가담되어 아군작전에 직접, 간접으로 행동하는 자”를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미북구지대에도 양민이 있었지만, 대대장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조속한 시간 내에 공비를 완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¹²⁷⁾

결국 거창 신원면 사건의 경우에서 보면, 연대장이 공비소탕을 위해 미수복 지역의 공비협력 가능자들을 사실상의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이 명령을 곧 ‘이적행위자를 교전 중인 적과 동일시하여 총살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군·경 가족과 노인, 아동을 선별한 후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다. 이것은 거창군 신원면 사건 발생이전이었던 함평 11사단에 의한 집단희생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정인의 증언에 의하면 2대대장이 작전초기에 월야에 온 적도 있기 때문에, 2대대장은 5중대가 공비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미수복 지역의 민간인들을 사살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당시 5중대는 자신들이 수행한 작전상황에 대해 장성의 2대대 본부에 3일에 한번 씩 작전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보고자는 사병 1개 분대 규모 병력과 엇비슷한 숫자의 청방의 호위를 받으며 도보로 갔다고 한다.¹²⁸⁾ 당시 5중대는 마을에 들어가 주민 소개작전을 할 때도 팽이, 삽, 쇠스랑, 도끼 등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여 노획무기의 전과로 보고하였는데,¹²⁹⁾ 이 같은 내용은 공비사살과 무기노획이 중요 작전 목표였으며,

127)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3권, 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28~71쪽.

128) 김일호가 광주 연대본부에 보고하려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4쪽, 신청인 이용현, 진술조서 6쪽.

129) 유창기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75쪽.

그것이 대대, 연대에 그대로 보고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0년 말에 6중대 청년방위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연대본부에서 사살한 인명 수 등의 내용을 적은 5중대 전과표를 보았다는 윤석근의 진술에서도 뒷받침된다.¹³⁰⁾ 다만 5중대가 연대본부에 본 사건을 단순히 공비토벌 전과로 보고했는지의 여부와 대대장과 연대장이 5중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살상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 권준옥을 1951년 1월 22일 연대 병기장교로 인사이동 조치한 것으로 보아 집단 희생·성폭력 사건 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마차원에서 전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연대의 작전명령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연대장이 직접 “이적행위자’를 총살하라”라고 명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1사단의 작전 지휘 하에서 발생하였던 거창사건의 경우를 유추해 보면 연대차원에서 예하의 2대대장과 5중대장이 불갑산 인근의 주민 중 청·장년들을 사실상 공비로 간주하여 총살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정도의 명령이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2대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5중대 작전지역에서 유독 민간인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던 이유는 5중대 작전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공비와의 실제 교전 경험,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군인들의 공포감과 보복심, 감정적 대응, 그리고 5중대장 자신이 매우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인데다 인명을 경시하는 품성을 갖고 있었던 점, 5중대 군인들의 훈련 부족과 규율이 없었던 점 등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김일호는 이 사건의 책임이 중대장 권준옥에게 있다기 보다는 사단장 최덕신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¹³¹⁾ 그는 권준옥 중대장이 최덕신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주민살상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중대장 권준옥이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넓게 보아 사단차원의 견벽청야 작전개념, 특히 ‘청야’작전이 사실상 민간인 집단살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실제 1951년 초 거창사건이 폭로되어 11사단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최덕신 사단장은 국방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거창군 신원면 거주 주민을 총살한 원인을 “남여노유를 막론하고 적정에 대하여 함구할 뿐만 아니라 식사 기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구실 하에 전기와 여한 비참한 민족사를 연출한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¹³²⁾ 이는 민간인 총살의 일차 원인을 국군의 과오보다

130) 참고인 윤석근, 진술조서 6쪽, 2006. 12. 13.

131) 참고인 김일호, 녹취록 6·21쪽, 2007. 2. 15.

132) 사단장 보고서, 『거창사건(양민학살)』, 『동이일보』, 1960.5.14.



는 적에게 협력하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그의 사고방식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그는 이 보고서에서 자신이 ‘무차별적 사실’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사단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인 살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러나 함평11사단 사건 중 남산피 등지에서의 주민 선별과정을 보면 이듬해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 등지에서의 주민총살 직전의 주민 선별과정과 대단히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 ‘선별 후 총살’은 공식화된 작전명령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명부록, 혹은 비공식화된 지침으로 하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덕신의 ‘견벽청야’ 작전개념은 연대, 대대 혹은 말단 지휘관에게는 적의 근거지 즉 함평지역의 경우에는 미수복 지역이었던 불갑산이나 태청산 인근을 초토화시키면서 적으로 의심될만한 주민들을 무차별 총살하여도 무방하다는 명령으로 해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¹³³⁾

결국 상급부대인 연대나 사단에서 직접 주민 살상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 주민을 공비 내통자로 간주하고 벌인 무리한 토벌작전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견벽청야’ 작전개념 하의 토벌작전은 산간지대 인접 지역 대대와 중대에서는 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거창 신원사건이 폭로된 1951년 3월 이후 이전의 모든 작명이나 작전내용이 변조,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5중대장은 권준옥 대위, 2대대장은 유갑열 소령, 20연대장은 박기병 대령, 11사단장은 최덕신 준장이었기 때문에 함평11사단 사건의 책임은 이들 상급 지휘관에게까지 귀속된다. 그리고 공비토벌을 위해서는 전투의 필요(necessity)를 넘어서는 민간인 무차별 총살까지도 묵인 방관했던 국가에 책임이 귀속된다.

한편 육군본부에서 미군의 작전보고 문서를 번역한 『정기작전보고』(1950. 10.)에는 11사단이 미9군단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9군단도 함평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133) 전라남도 25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한 도처에서 ‘인민공화국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퇴로를 차단당한 괴뢰군 잔도를 호남일대에서 섬멸하고자 소탕전을 실시하였다. 제1기에는 적정 수집과 미수복지 회복에 두었으며, 제2기는 적 주력 섬멸하고 호남선 개통을 하였으며, 제3기에는 빨치산 토벌에 있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제4기는 각 전투부대가 확보한 거점을 이용하여 견벽청야 전법을 사용, 각지에 출몰하는 적을 체포, 섬멸하여 전남의 치안도 확보되었다.

2) 가해의 적법성 여부

가) 사건 당시 법적 상황

사건 당시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¹³⁴⁾이 헌법원칙이었으며,¹³⁵⁾ 특히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제한헌법』, 『(구)형법』, 『(구)형사소송법』, 『미군정 법령』, 건국 후 대한민국법령, 국제법으로서의 국제인도법¹³⁶⁾ 등이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서 발효되고 있었다.¹³⁷⁾

134) 국가비상사태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제약은 될지언정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계나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계엄하의 특별조치에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1953.10.8. 헌위결정 4286 헌위2)
-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의 효력은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서면 안 된다. (1985.5.28. 대판 81도 1045)

135) 『제한헌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6) 해당하는 국제인도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국제인도법 원칙(강행규범적 성격)

- 인도주의 원칙(the principles of humanity) : 전쟁 시 취해지는 모든 행위는 인도주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
- 구별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tinction)
공격은 군사적 목표에만 가해져서 민간인이나 민간 물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민간인의 희생을 동반하는 공격의 경우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의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군사적 필요의 원칙(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군사력은 합법적인 군사적 필요를 얻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나) 조약

-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46조. (생명존중의무)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와 제16조. 조약의 경우, 전자는 국제관습법적 성격에 의해, 후자는 한국전쟁 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준수선언에 적용가능하며, 이항의 문제는 있지만 불법성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법학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근거자료로는 이 협약의 2장이 피해자가 자국 민간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국제적십자사(ICRC) 주석서뿐만 아니라 국내학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 최득진, “자국민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에 관한 일 고찰”, 제성호, “국제인도법의 자국민 적용문제”, 이장희,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조시현, “노근리학살사건의 국제법적 성격” 등이 있다.

137) 제한헌법 제100조에 의해 정부 수립 이전의 법령이 당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었다.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1950년대 판례들을 보아도 의용일제법령이나 미군정 법령들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4288형상87(1955. 7. 8); 대법원 4288형상22(1955. 5. 31); 대법원 4287형상5(1955. 2. 25); 대법원 4287민상118(1954. 5. 26); 대법원 4286형상162(1953. 11. 23); 대법원 4285민상118(1952. 2. 12) 등.



나) 가해행위의 적법성 여부

단지 공비 또는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만으로 국가기관인 군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전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행위¹³⁸⁾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¹³⁹⁾과 적법절차 원칙¹⁴⁰⁾, 재판받을 권리(제헌헌법 제22조)를 침해하였다.

당시 공비 또는 빨치산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으로는 『(구)형법』¹⁴¹⁾, 『국방경비법』¹⁴²⁾, 『국가보안법』¹⁴³⁾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

138)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국제법적으로는 Prosecutor v. An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Imanishimwe 사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1심판결, 사건번호 ICTR-99-46-T, paras. 793, 788~798.에서, 군 지휘관 Imanishimwe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로 민간인을 불법체포하고, 임의처형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재판부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만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하는 구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evidence shows that, on 6 June 1994, soldiers arrested Witness MG and thre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because of their suspected ties to** the RPF(적군)."

"The Chamber noted that many of the victims, although not taking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at the time of the violations, were accused of ties to the RPF. Moreover, the soldiers' actions were [either] motivated by their search for enemy combatants and those associated with them or, as in the attack at the Gashirabwoba fo Otball field, carried out under the pretext of such a search."

139) 생명권이—그 헌법적 근거조항에는 이점이 있으나—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학계 및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생명권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설

- 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 ②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제헌헌법 제9조),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권영성)
- ③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제헌헌법 제9조)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에서 찾는 견해.(허영)
- ④ 헌법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계희열)

•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140) 이 원칙과 관련된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들 수 있으며, 제4조에서는 "법에 적당한 규정과 법이 요구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포고는 미 군정청이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막고자 1948년 4월 5일 군정청 포고(USAMGIK :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roclamation, 포고 호수 불명)로 제정하였다. 한편 이 원칙의 헌법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적법절차원칙이 법치주의 원칙처럼 명시적으로 당시 헌법에 언급(1987년도 개정헌법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헌법안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자유권(다수설, 제헌헌법 제9조)과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규정(제헌헌법 제28조)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141) 구형법은 1907년에 제정되고 1921년과 1941년에 개정된 일본형법으로, 우리 형법이 시행(1953.10.3)되기 전까지 『조선형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명치 45)년 이래로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던 일본 형법으로 우리 형법에 대응시켜서 부르는 말이다. 본 사건과 관련규정은 제3장(외환에 관한 죄) 제81조-제89조에 간첩죄와 이적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42) 『국방경비법』은 1920년 『미국법전』의 입법례를 본받아 이적죄와 간첩죄를 제2편 제5장 전시범죄 하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구성요건은 그 행위 주체를 군법이 적용되는 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하한 자' 또는 '누구나'를 주어로 규정하

별조치령」¹⁴⁴⁾이 있었고, 후자 2개의 법의 경우 법 내용이 너무 가혹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이 있었다. 『국방경비법』 위반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구)형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인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이 집행되도록 그 실제적·절차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해 이런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5중대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살해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지휘관이 부하에게 범죄의 실행을 명령·권유·방조·교사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만일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도(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신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부하(지휘책임의 관계적 요건)들의 범죄행위를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¹⁴⁵⁾ 사건 발생 방지나 부하를 처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지휘책임의 행위적 요건-부작위) 지휘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¹⁴⁶⁾ 결국 전시라는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나, 국군의 민간인 불법 살해에 대해서는 군 최고 지휘자인 대통령까지 책임이 귀속된다.

여 군법이 적용되는 자가 아닌 민간인도 그 범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32조(이적) 및 제33조(간첩)였다.

143)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49년 12월 19일 일부개정을 거쳤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였다.

144) 이 법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북한의 위세에 밀려 대전으로 천도한 정부에 의해 1950년 6월 25일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되었다. 이는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의 반민족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신속 엄중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괴군 침공에 의하여 발생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적용되도록 한시법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공비내통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4조 제3호~제5호, 제5조였다.

145) 국제형사재판소(ICTY나 ICTR)의 판례에 따르면, 지휘관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지적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리는 정도의 일반적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다. 현장에 있는 것으로 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결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Prosecutor v. KAYISHEMA, Clement, ICTR, 1심판결, paras. 508.

" present at Mubuga Church before and during the attacks there "

• Prosecutor v. MUSEMA, Alfred, ICTR, 1심판결, paras. 780.

"It has been establish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Musema was present at the attack during which assailants closed off the entrance to the cave with wO Od and leaves, and set fire thereto."

146) 전법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지휘관을 항상 직접책임 또는 지휘책임 두 가지로 기소(예비적 기소)를 하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두 번에 걸쳐 유무죄 여부를 심사받게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부하에 비해 높아진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례가 구(舊) 유고형사재판소(ICTY)의 Prosecutor v. Strugar 사건(사건번호 : IT-01-42)인데, 이 사건에서 지휘관인 Strugar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직접책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부하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knowledge)를 입증하여 지휘책임으로 처벌을 하여, 마후 지휘관들의 무처벌(impunity)의 관행을 막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 소결

결론적으로, 군이 비교전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공비 또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만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살해한 행위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¹⁴⁷⁾이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은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칙도 위반한 행위이다.

빨치산토벌작전 중의 군사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노인, 여성, 아동, 아이까지 살해할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적 필요에 비례될 수 없는 무차별적인 민간인의 살해행위는 정당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피해 원칙에도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이 50여 년이 지나 명확하게 가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시효의 문제¹⁴⁸⁾가 남아 있지만, 신청인 진술, 가해 주체 측 참고인 진술, 각종 진술간의 일치, 사건의 실재와 내용을 확증해 주는 문서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과 같이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하고자 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147) 전쟁범죄의 구성요건인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의 요건에 대해 제네바협약 2조는 4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네바협약상의 보호대상, 무력충돌의 존재, 무력충돌의 국제성, 무력충돌과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다. 우선, 제네바협약은 보호대상을 자국이나 점령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협약 제2편의 제13조에는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충돌 당사국의 주민 전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함평11사단사건의 희생자(아동, 여성, 노인 포함)도 이 협약의 제2편의 보호대상에 속하며, 또한 한국전쟁은 국제적 무력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의 수나 구유고형사재판소의 전쟁성격에 대한 판결, 한국전쟁당시 한국육군에서는 빨치산을 「헤이그 육전법규」에 의거하여 포로로 대우하도록 조치, 북한을 형법상의 간첩죄 적용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 국내 대법원의 입장에서 뒷받침되며, 무력충돌관련성 요건을 보면, 함평11사단사건에서 빨치산과 내통한 혐의자를 색출하고 처형한 행위는 전시 하에서 적과 관련된 행위이며, 가해자들이 교전당사자로서 총으로 무장한 작전 상태에서 가해행위를 하는 등 무력충돌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가해행위는 전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을 다룬 Prosecutor v. An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Imanishimwe 사건에서 적과 내통혐의자를 임의 처형한 행위를 전쟁범죄로 판결한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입장에서도 뒷받침 된다.

148)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시효의 문제도 있지만, 배상은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개념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후 국가에서 배상을 하려 한다면 언급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보상법’ 형식으로 입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5. 사건 이후 유족의 피해

쌍구룡 사건의 생존자 이금남의 경우 할아버지와 어머니 등 3명의 가족이 5층대에 의하여 총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금남 본인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방죽으로 던져진 경험을 한 후 지금도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남산피 사건의 정남숙의 경우 자신의 눈앞에서 충격으로 주민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7회나 충격을 받고 살아나 고통 속에서 살아 왔다. 모평사건의 장종석의 경우 어릴 때 발목에 입은 총상 때문에 최근에 경운기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안종필의 경우 평생 대중목욕탕 한번 가보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이외에도 충격에 의한 사망과 부상으로 발생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사진) 해보면 금덕리 중대본부 터(왼쪽)와 장교마을 앞에 세워진 전사비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연좌제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청인 이계준은 어머니 김증산이 1951년 나산면 우치리 사건에서 59세에 5층대 군인에 의하여 사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서에 '1951년 1월 14일 여자유격대원으로 아군과 전투 중 사살된 자'로 잘못 기록되어 자신과 아들의 취업에 필요한 신원조회가 문제되었다. 이외에도 가족의 사망사실이 잘못 기록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음이 분명하다.

V. 결론 및 권고 사항

1. 결론

가. 노방주 외 248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당시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및 인근에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게 집단 총살되었으며, 정남숙 외 8명은 현장에서 살아남았으나 심한 부상을 당했다.

나. 조사 결과 밝혀진 본 사건의 주요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5중대는 1950년 11월 27일 정오 무렵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주막에 모여 있던 주민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외치재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1950년 12월 6일 새벽에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과 동촌마을에서,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에서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으며, 서촌마을에서는 6일 오전 군인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오다가 주민을 총살하였다. 다음날인 12월 7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월야면 월야·월악리에서 5중대장 권준옥의 직접 지휘 하에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다. 또 12월 9일 오전 나산면 이문리 주민을 인근 나산천변에서, 같은 날 오후에는 월야면 외치리 주민을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으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12월 31일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 원주민과 불갑산 용천사 아래 광암리에서 소개되어 왔던 주민을 상곡리 쌍구룡에 불리내어 집단으로 총살하여 방죽에 던져 넣었다. 다음 해인 1951년 1월 12일 오전에는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원주민과 용천사 옆 산내리에서 소개 나왔던 주민을 쌍구룡 앞으로 나오라 하여, 나오는 대로 총살하였다. 1월 14일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과 나산면 계동 마을을 지나온 군인들은 우치리에서 주민을 집단학살하였다. 이외에도 5중대가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에 주둔 시기에 인근 지역 주민을 다수 총살하였음이 밝혀졌다.

다. 조사결과 함평 11사단 사건의 희생자는 오봉근(다-1223), 정진국(다-1224), 유재섭(다-1225), 유태열(다-1226, 7238), 정성규(다-1227), 오팔근(다-1228, 7239), 박두남·김순란·박종한·박순심·박아기(다-1202), 이복녀·한아기(다-1203), 이순득·강

아기(다-1204), 서만동(다-1196), 서석암(다-1197), 광관용(다-1198), 광석연(다-1199), 서용기(다-1200), 광지연(다-1201), 박소남(다-1205), 김삼금·김성애·김초순·김상율(다-2869), 이연범(다-1318), 이판금(다-3487), 임봉수(다-1188), 임양수(다-1189), 임선진(다-1190), 김병수(다-1191), 김수성(다-1192), 노병훈(다-1193), 이수범(다-1194), 노병조(다-1195), 노병식(다-1196), 노준기(다-1207), 김갑순(다-1127), 정진덕(다-1128), 최용례·정천수(다-1129), 정종문(다-1130), 심용기(다-1131), 정길문(다-1132), 정동수(다-1133), 정계환(다-1134), 정방섭(다-1135), 정병모(다-1136), 정진철(다-1137), 정동모(다-1138), 정민모(다-1139), 정진발(다-1140), 정창진(다-1141), 정재호(다-1142), 김순애(다-1143), 김재만(다-1144), 정옥모·정기모(다-1145), 정재환(다-1146), 정중진(다-1147), 정문모(다-1148), 정양모(다-1149), 정진봉(다-1150), 정병모(다-1151), 정근모(다-1152·신청인 안춘자), 정동석·정동섭(다-1155), 이사석(다-1156), 정홍섭(다-1157·신청인 정윤철), 정봉수(다-1158), 정진철(다-1160), 이점동(다-1161), 정남섭(다-1162), 정봉섭(다-1163), 정근모(다-1164·신청인 정송모), 윤필중(다-1165), 정상휴(다-1166), 정의모(다-1167), 조병혁(다-1168), 정병선(다-1169), 정진차(다-1170), 정현수(다-1171), 정현기(다-1172), 이계순(다-1173), 정해로(다-1174), 정영관(다-1175), 김영섭(다-1176), 정봉휴(다-1178), 정재복·정홍섭(다-1179·신청인 정재모), 정재섭(다-1180), 정병섭·김명자(다-1181), 정광열·정말동(다-1182), 정진을(다-1184), 정동휴(다-1185), 정동기(다-1186), 정귀남(다-1187), 정맹모·정차임(다-1315), 정열(다-1316), 정삼근(다-2243), 김도담·김윤월·김쌍순(다-2244), 정병우·정민선(다-2872), 정태섭(다-2974), 정팔봉(다-3900), 정석두(다-4267), 정병찬(다-4435), 윤성중(다-6741), 정계형(다-3752), 이남열(다-1209), 이상근(다-1210), 정기봉(다-1211), 정기업·정기순(다-1212), 정기선(다-1213), 이계주(다-1214), 정기동(다-1215), 정갑현(다-1216), 정석봉(다-1217), 정달선(다-1218), 정기복(다-1219), 정상현(다-1220), 정만선(다-1221), 정기우(다-1222), 김기복(다-1121), 김담봉·박삼봉(다-1122), 김용길·이계례(다-1123), 김양임(다-1124), 정갑산(다-1125), 안명임·김맹수(다-1126), 오경선(다-2870), 김영만(다-1230), 장진섭·조운여·장이님·장재님·청암택(정순섭의 처)·장순섭(다-1231), 노월산·김순덕·김아기(다-1232), 이석여·최봉예·이정행(다-1233), 박영수·구순녀·박금희·박민수·김연녀(다-1236), 김만엽·김경엽(다-1240), 이봉범(다-1253), 이종락(다-3923), 장아기(다-4689), 윤상수·김정임·윤병길·윤병식·윤복덕(다-1208), 김유



촌(다-1234), 주순님·윤창중(다-1235), 임막동·윤선순·임남도·임명순(다-1237), 이귀범·이오목·이영범·이갑열·한대례·이인범·이현득·이윤범·이문범(다-1238), 윤옥중(다-1241), 장규옥·윤효임·장아기(다-1242), 임삼봉·윤관술(다-1243), 정순임(다-1246), 윤석열(다-1247), 김치녀·김용순·윤명란(다-1248), 윤양중(다-1249), 김기중(다-1250), 정지족(다-1251), 윤규삼·정고녀(다-1252), 노방주·노병희·노아기(다-1254), 이유용(다-2871), 최희락(다-3922), 정동용(다-10830), 윤덕림·윤석규·윤석문·윤유성·장양림·이평림·모순녀(다-10831), 김증산(다-1054), 안귀식(다-1114), 안귀순·이아기(다-1115), 김신광(다-1118), 정병옥(다-1119), 문앵례(다-1120), 정성면(다-1229), 이동선·이동기(다-555), 안해동(다-556), 김기만·정약순·강정순·김인순(다-1049), 정창기(다-1177), 이성신(다-1319), 이용범·윤효순(다-2744), 김영만(다-2862), 노봉래·노연자(다-2868), 최남휴(다-3223), 이윤선·이손동(다-3626), 이달성(다-3899), 윤일두(다-3919), 박명수(다-4104), 배판수(다-4557), 이기범(다-4558), 양대자(다-5612), 윤봉연(다-6302), 서이섭(다-6306), 김병갑(다-8485), 봉진성(다-10810), 이병옥(다-1173)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 김유순(다-1154), 정달모(다-1159), 정기찬(다-1314), 정진기(다-1317), 이상숙(다-2245), 정희섭(다-3898), 정남선(다-4696), 정남숙(다-1183), 장종석(다-4944)은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였으며, 정남숙과 장종석은 현재 생존해 있다.

라. 희생자는 전라남도 함평군과 광산군 장성군 거주민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가 93명으로 37.3%, 61세 이상이 11명으로 4.4%였다. 또 2세의 유아를 비롯한 호적 미등재자도 16명이었다.

마.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는 불갑산 인근에 자리 잡은 이들 지역에서, 장교 동촌 서촌마을 사건은 국군과 빨치산이 전투를 할 때 징과 팽과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다고, 수해리 사건은 태청산의 빨치산에게 협력하였다고, 남산뫼 사건은 사건 전날 밤 봉홧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다고, 외치리 사건은 마을 앞 도로를 파손하였다고, 쌍구룡·모평마을 사건과 우치리 사건은 불갑산 아래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소개 나온 지역으로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이문리 사건은 빨치산 협력자가 마을에 거주한다고 하여, 과도한 의심이나 감정적 반응에 좌우되어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총살하였다. 당시 이들 마을의 경제력이 있는 주민은 광주 등 대도시로 사전에 피난 갔고, 실제로 좌익 활동을 하였거나 빨치산에 협조

적이었던 주민들은 불갑산에 입산하거나 군인들이 무서워 산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빨치산 협력,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다. 단지 사건 지역 일부 주민이 살아남기 위해 빨치산에게 약간의 음식을 제공한 일은 있으나, 일부 주민에 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5중대의 행동은 감정적 대응에 따른 보복으로 판단된다.

바. 5중대는 장교 동촌 마을과 쌍구룡 모퉁 우치리에서 주민들을 마을 앞 도로변에 불러내어 어떠한 선별절차도 없이 총살하였고, 수해리에서는 청·장년 남자를 가려내어 총살하였고, 남산피에서는 17~45(40)세로 추정되는 남녀를 총살하였으며, 이문리에서는 주민을 지목·선별한 다음 총살하였고, 외치리에서는 청·장년을 연행하여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인근에서 총살 또는 타살하였으며,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주민은 주막에 모여 있다가 5중대 초소로 연행되어 살해되었다.

사. 함평 11사단 사건의 가해부대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가해부대의 지휘·명령계통을 보면 국군 11사단 사단장 최덕신 준장, 20연대 연대장 박기병 대령, 2대대 대대장 유갑열 소령, 5중대 중대장 권준옥 대위였다.

아. 5중대장 권준옥 대위는 사건현장에서 주민을 집단 학살하도록 지시·명령하였고, 20연대장은 5중대의 이 같은 주민 살상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11사단장은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이라는 주민희생이 따르는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예하 부대에 시달하였다. 함평11사단의 지휘명령 계통 상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5중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추정되는 연대 병기장교로의 인사이동이 있었을 뿐이다. 작전 초기 11사단은 미군 9군단의 지휘를 받았으며, 1950년 11월 이후에는 8사단과 교체될 때까지 3군단의 지휘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책임은 한국군 3군단장 그리고 총참모장, 국방부장관, 대통령으로 연이어 귀속된다.

자. 함평 11사단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¹⁴⁹⁾’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닌데도, 빨치산토벌을 내세워 다수 주민을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 살해사건이었다.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이 아닌 어린이 노약자까지 포함된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을 재판 등의 적법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149)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 제6조.



2. 권고 또는 화해조치

가. 명예회복 조치

1) 국가의 공식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적인 민간인 총살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사건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유족들은 매년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인에 대한 전사 기념비를 세우며 화해조치를 이미 시도한 것에 주목하여, 해당 정부부처는 유족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2) 위령사업의 지원과 피해자 원호

유족들은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사건현장을 순회하며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 추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건현장에 표지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령사업이 유족들의 각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규모 있는 위령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건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 치료 및 사건관련 유족에 대한 원호 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¹⁵⁰⁾

나. 법적 제도적 정비

1) 사망사실 기재와 호적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희생자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멸손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를 보면 본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30여 명의 희생자가 거꾸로 좌익에 의한 피살자로 기록¹⁵¹⁾되어 있는데, 이들 희생자들은 비무장·무저항 민간인으로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현재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법) 등재 또는 정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이번 진실규명이 결정된 후 잘못 등재된 호적의 정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150) 이런 점에서 최근 함평군 해보면에 개원한 국군함평병원을 본 사건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뿐만 아니라 부상자 등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무상 또는 소액의 유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51) 월간조선사, 『6·25사변 피살자 명부』1, 2003, 370쪽.

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1) 공식기록에 등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의 시·군지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공식 기록물에 해당 사실을 올바르게 등재하여 피해자와 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실(史實)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군인대상 교육

전쟁발생 시나 국가위기 하에서 민간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군인, 특히 지휘관들이 인권보호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3) 평화인권교육 강화

전쟁의 반인륜성과 잔학성 그리고 함평11사단과 같은 전쟁 시기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을 향후 미래세대인 초·중등학교 학생은 물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4) 관련 법률의 정비

정부는 전시 하에서 민간인 즉결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군 형법 등의 관련조항을 시급히 정비하여,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